보도자료2 (상세본)	이 자료는 2026년 8월 3일(월) 18: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

’26. 8. 3.

재 정 경 제 부

목 차

Ⅰ.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

1. 미래성장동력 확충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4
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⑦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⑨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법인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2. 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3.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농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
Ⅱ. 민생·지방 지원

1. 서민·중산층 지원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8)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법) ····· 3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(조특법) ····· 1
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·령) ····· 1
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(관세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
2. 청년 및 혼인·출산 지원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
3. 지방주도성장 강화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
Ⅲ.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

1. 부동산세제 합리화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정(소득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·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, 종부령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(1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령) ····· 1
(1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
(1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·칙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1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·령) ····· 1
②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·령) ····· 1
(2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, 종부령) ····· 1
(2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
2. 가업상속공제 개편

(1)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령) ····· 1
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령) ····· 1
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농특령) ····· 1

3. 비과세·감면 정비

【적용기한 종료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·칙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7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부가법·령) ····· 1
(1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재정전환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(1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재설계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·칙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령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1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1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상시화】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적용기한 연장】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종부령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Ⅳ.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

1. 세제 합리화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소득법·령, 법인법·령) ····· 1
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·손실 익금·손금 불산입(법인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, 법인령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, 상증법) ····· 1
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, 법인령) ····· 1
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주세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
2.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

(1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·령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·령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·령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) ····· 180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징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
3. 납세편의 제고

(1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소득령·법인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국기법) ····· 1

(4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부가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징법·령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령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법·령, 소득령) ····· 1

Ⅴ. 기타

【소득세 및 법인세】

(1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소득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·령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령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법·령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양도소득세 및 상속·증여세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·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령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상증법) ····· 1
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종부법) ····· 1
(9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(10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(11)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부가가치세 등】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부가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조특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 ····· 1

【국제조세】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) ····· 1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·령) ····· 1
④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국조법) ····· 1
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(국조령) ····· 1
⑥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국조령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조법·령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소득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법인법) ····· 1
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(법인령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소득법, 법인법) ····· 1

【관세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(관세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관세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관세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····· 1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관세법) ····· 1

【국세 제반 분야】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2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3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4)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(국기법) ····· 1
(5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6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기법) ····· 1
(7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국징법·령) ····· 1
(8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·령) ····· 1

[참고]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····· 1

Ⅰ.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

1 미래성장동력 확충

(1)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

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(조특법 §29①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○ (요건) **내국인**이 적격품목을 **국내에서 직접 생산·판매** - (국내생산) ❶+❷ ❶ **핵심공정**을 국내에서 수행하고, **적격 생산비용** 중 **국내지출 비중**이 **일정 비율 이상**일 것* * 핵심공정, 적격 생산비용,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❷ **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***이 **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** *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- (국내판매) ❶~❹ 모두 충족 ❶ **공급장소**가 **국내**일 것* *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(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) ❷ **생산된 과세연도** 또는 **다음 과세연도에 판매**될 것 ❸ **판매상대방**이 **특수관계인**인 경우 **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***를 **제출**할 것 *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❹ **중고품이 아닐 것** ○ (적용기한) **'36.12.31.**

<개정이유>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(조특법 §29②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❶**중요성**, ❷**유망성**, ❸**필요성**을 모두 충족하는 **태양광발전, 풍력발전, 이차전지, 반도체,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*** *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❶ **녹색전환** 및 **경제안보** 차원의 **전략적 중요성**이 인정되고 **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** ❷ **현재 수익성이 부족**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**경쟁력을 유지·발전시킬 필요** ❸ **국내 생산기반이 취약**하고, 투자금액 대비 **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,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** 가능

<개정이유>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(조특법 §29③·④·⑤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□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: ❶ × ❷ × ❸

❶ (기준 공제금액)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
❷ (지방우대) 기준 공제금액 × 지방우대계수

<table>
<tr><th>구분*</th><th>계수</th></tr>
<tr><td>❶ 수도권</td><td>1.0</td></tr>
<tr><td>❷ 비수도권 광역시 등, 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1.1</td></tr>
<tr><td>❸ 기타 비수도권,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</td><td>1.3</td></tr>
<tr><td>❹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1.5</td></tr>
</table>
*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서울과의 거리, 인구 및 경제·사회여건 등 반영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
❸ (점감구조)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
- ('34년) 75% → ('35년) 50% → ('36년) 25% → ('36.12.31.) 일몰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□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: Min(❶, ❷)

❶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%

❷ (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* 투자누계액의 50%) - (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)
*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 (조특법 §130③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※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(조특법 §127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동일한 과세연도에 **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**	□ **중복배제 되는 공제**에 **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**
○ (**감면**)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	○ (좌 동)
○ (**공제**) 통합투자세액공제 등	○ 통합투자세액공제, **국내생산세액공제** 등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(조특법 §132·§144)

현 행	개 정 안
□ 이월공제(10년)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	□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
○ 통합투자세액공제, 통합고용세액공제 등	○ (좌 동)
<추 가>	○ 국내생산세액공제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·제출(조특법 §29⑤·⑥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○ 해당 과세연도 **과세표준 신고** 시 **세액공제 신청서**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<신 설>	□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·제출 의무 ○ **생산비용, 생산·판매량 등 입증 자료***를 **공제기간 경과 후 10년**까지 **보관**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**제출** *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

<개정이유>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차규정 마련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·판매 분부터 적용

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(조특법 §29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**을 위한 **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**(수정신고) ○ (**대상자**)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**'26.12.31.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** *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○ (**신청내용**)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○ (**납부세액**)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*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

<개정이유> 제도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(조특법 §29의3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** ○ (**관련자료**) 적격품목의 선정, 공제액 산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* *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, 판매가격, 생산·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○ (**요청대상**) 관계 행정기관, 적격품목 생산·판매 기업 등 ○ (**비공개 자료**) 경제안보,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,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료

<개정이유>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운영 기반 구축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
(소득법 §33의2, 법인법 §2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	□ 손금산입 한도 조정
○ 1대당 연 800만원	❶ (전기·수소차) 1대당 연 1,000만원 ❷ (❶ 외) 1대당 연 700만원
- 단,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	- (좌 동)

<개정이유> 친환경차 사용 촉진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
(조특법 §10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가전략기술 분야	□ 수소 분야 확대 개편
○ 반도체, 이차전지, 수소 등	○ 수소 분야 → 미래형 에너지 분야*
	*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

<개정이유> 첨단 전략산업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R&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

(4)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(부가령 §19)

현 행	개 정 안
□ 자동차*의 **구입·임차·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** *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른 자동차	□ **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**
ㅇ (**원칙**) 불공제	ㅇ (좌 동)
ㅇ (**예외**) 다음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 - 운수업, 자동차 판매업 등	
<추 가>	- **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** (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)

<개정이유> 자율주행 승용차 연구개발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·임차·유지하는 분부터 적용

(5)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(조특법 §100의32, 조특령 §100의32)

현 행	개 정 안
□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	□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**투상세 감면**
○ (**과세범위**) 미환류소득*의 20% * 환류대상 기업소득 - 환류대상	○ (좌 동)
<추 가>	- **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: 10%*** *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
○ (**환류대상 기업소득***) * 각 사업연도의 소득 +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- 법인세액 등 차감 - (**투자포함형**) 기업소득 × 80% - (**투자제외형**) 기업소득 × 30% ○ (**환류대상**)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, 배당 ○ (**과세유예**)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- 2년 후 잔여 차기환류 적립금*의 20% 과세 * 차기환류적립금 – 초과환류액	○ (좌 동)
<추 가>	▪ **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: 10%*** *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
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21의26)

현 행	개 정 안
□ 사업재편계획*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*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승인	□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특례)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- (예외) 다음의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▪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	○ (좌 동)
<추 가>	▪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▪ 석유화학기업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기업 구조조정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104의30)

현 행	개 정 안
□ 우수 선화주기업* 인증을 받은 **화주기업**에 대한 **세액공제** *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-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	□ **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**한 **우수 화주에** 대한 **세액공제** 신설
○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- (**대상**) 국제물류주선업자(포워더)* *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- (**요건**)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비중이 40% 이상 - (**공제율**)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.5%~1.5% - (**한도**)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%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** - (**대상**) 해운법령에 따라 **우수화주 인증**을 받은 **화주기업** - (**요건**)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**3년 이상 계약 체결** - (**공제율**) **지출한 운송비용의 1%** - (**사후관리**) 계약 체결일부터 **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취소** 또는 **계약 해지** 시 **감면세액 상당액** 추징 - (**한도**)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%
○ (**적용기한**) '28.12.31.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

2 중소 ·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

(1)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

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(조특법 §7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

○ (대상)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○ (특례) 소득·법인세 5~30% 감면

<신 설></td><td>□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

○ (좌 동)

○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
- 유예기간*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% 적용
* 중소기업 졸업 후 5년(상장기업 7년)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</td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본점 소재지</th><th rowspan="2">업 종</th><th colspan="2">감면율(%)</th></tr>
<tr><th>소</th><th>중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수도권</td><td>▪ 도·소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</td><td>10</td><td rowspan="2">-</td></tr>
<tr><td>▪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▪ 일반서적 출판업 등</td><td>20</td><td>1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 방</td><td>▪ 도·소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</td><td>1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▪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30</td><td>15</td></tr>
</table>
- (장수성실기업*) 감면율 +10% 우대
* 업력 10년 이상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

○ (연간한도) 1억원 - (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× 500만원)

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
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본점 소재지</th><th rowspan="2">업 종</th><th colspan="3">감면율(%)</th></tr>
<tr><th>소</th><th>중</th><th>점감 (신설)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수도권</td><td>▪ 도·소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</td><td>10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-</td></tr>
<tr><td>▪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▪ 일반서적 출판업 등</td><td>20</td><td>10</td><td>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 방</td><td>▪ 도·소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</td><td>10</td><td>5</td><td>2.5</td></tr>
<tr><td>▪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30</td><td>15</td><td>7.5</td></tr>
</table>
<삭 제>

○ (좌 동)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(점감구조)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
(장수성실기업)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② 영상·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(조특법 §25의6·§25의8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영상·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

○ (대상)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

○ (특례)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·법인세에서 공제

- 영상콘텐츠
<table><tr><th>구분(%)</th><th>중소</th><th>중견·대</th></tr><tr><td>기본공제</td><td>15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추가공제*</td><td>15</td><td>10</td></tr></table>* 국내 제작비 비율 80% 이상 등 요건 충족 시

- 웹툰콘텐츠
<table><tr><th>구분(%)</th><th>중소</th><th>중견·대</th></tr><tr><td>기본공제</td><td>15</td><td>10</td></tr></table>
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</td><td>□ 점감구조 도입

○ (좌 동)

○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
: 유예기간*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.5% 적용
* 중소기업 졸업 후 5년(상장기업 7년)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

- 영상콘텐츠
<table><tr><th>구분(%)</th><th>중소</th><th>점감(신설)</th><th>중견·대</th></tr><tr><td>기본공제</td><td>15</td><td>12.5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추가공제*</td><td>15</td><td>12.5</td><td>10</td></tr></table>* (좌 동)

- 웹툰콘텐츠
<table><tr><th>구분(%)</th><th>중소</th><th>점감(신설)</th><th>중견·대</th></tr><tr><td>기본공제</td><td>15</td><td>12.5</td><td>10</td></tr></table>
○ (좌 동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성장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

(2)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(조특법 §28의5)

현 행	개 정 안
□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	□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
○ (대상 자산) -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	○ (좌 동)
<추 가>	- 안전시설*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* (예) 산업재해·화재 예방 시설 등
○ (내용) 기준내용연수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※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‘28.12.31.	

<개정이유> 안전시설 투자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

(3)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

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(조특법 §13)

현 행	개 정 안
□ 벤처투자회사 등*이 벤처기업 등** **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** *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기금운용법인 등 ** 벤처기업,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	□ **투자대상기업**의 **업력요건 완화** 및 **과세특례 상시화**
○ (**대상**)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	○ (좌 동)
○ (**특례**)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	
○ (**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**) -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-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* * 유상증자 대금의 30% 한도	
- 기업 설립 후 **7년 이내**에 유상증자, 잉여금 자본전입, 채무의 자본전환	- **7년 → 10년**
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	**<삭 제>**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(조특법 §13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	□ 인구감소(관심)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
○ (요건)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·간접 출자	○ (좌 동)
○ (공제율) 주식등 취득가액의 5%	
<단서 신설>	- 인구감소(관심)지역*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 : 5% → 7% *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
○ (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) -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	○ (좌 동)
-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	- 7년 → 10년
○ (적용기한) ‘28.12.31.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(조특법 §1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**	□ **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**
○ (**대상**) 벤처기업 등에 출자*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* 벤처투자조합,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,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○ (**특례**)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○ (**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**) -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-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* * 유상증자 대금의 30% 한도	○ (좌 동)
- 기업 설립 후 **7년 이내**에 유상증자, 잉여금 자본전입, 채무의 자본전환	- **7년 → 10년**
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	**<삭 제>**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

(1)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신설 및 일반 ISA 정비

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 (조특법 §89의2·§91의24·§91의29 신설·§129의2·§146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○ (가입대상)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*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○ (특례)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- 일정 소득 이하* 청년(15~34세) 가입자 납입금 10% 소득공제 *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) 이하(총급여 8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) ○ (투자대상)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, 국민성장펀드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등 ○ (운용방식) 복수계좌 허용(일임형, 신탁형, 중개형) ○ (납입한도) 연간 2천만원, 총 2억원 ○ (인출제한)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의제하고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-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 ○ (상품간 연계) ISA 등*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 허용(2억원 한도) * ISA, 생산적금융 ISA, 청년미래적금, 청년도약계좌 ○ (계약기간) 최초 계약기간 3년,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○ (적용기한) '29.12.31.까지 가입분

<개정이유>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	□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
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, ISA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생산적금융 ISA

<개정이유>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(소득령 §40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금계좌 납입한도	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
ㅇ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	ㅇ (좌 동)
ㅇ (추가납입 대상)	
❶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	
❷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	
* ❶+❷ 합쳐서 생애누적 최대 1억원	
❸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	
<추 가>	**❹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**

<개정이유>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(소득법 §59의3, 소득령 §118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	□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
○ (기본한도) - 연 600만원 (IRP 납입액 포함시 900만원)	○ (좌 동)
○ (추가한도) ❶과 ❷ 중 적은 금액	
❶ ISA 전환금액* × 10% * ISA 만기 후 계좌잔액의 전부·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	❶ ISA 전환금액 × 10% +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 × 10%
❷ 300만원	❷ (좌 동)

<개정이유>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⑤ ISA 제도 정비(조특법 §91의18)

현 행	개 정 안
□ ISA 과세특례	□ 계약기간, 납입한도, 일몰기한 등 정비
○ (대상)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*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○ (특례) 한도 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* * (일반형) 2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) 400만원 - 한도 초과분 9% 분리과세	○ (좌 동)
○ (계약기간) 최소 3년, 이후 연장 가능 * 가입·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	○ 최초 계약기간 3년,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
○ (연간 납입한도) 연 2천만원 × [1+가입경과연수*] - 누적납입액 * 최대 4년	○ 연 2천만원
○ (총 납입한도) 1억원	○ (좌 동)
<신 설>	○ (적용기한) '29.12.31.까지 가입분

<개정이유>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

<적용시기> (계약기간) '27.1.1. 이후 신규 가입·연장하는 분부터 적용
(납입한도) '27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(2)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1의3O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*) 대한 과세특례 * Business Development Company, 펀드자산의 60% 이상을 벤처·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○ (대상)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* *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○ (특례) 배당소득에 대해 9% 분리과세 ○ (납입한도) 1억원 ○ (적용기한) '29.12.31.까지 배당분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(법인령 §61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	□ 손금 인정한도 확대
○ (일반법인, 기타 금융회사) - 채권잔액 × Max[1%, 대손실적률]	○ (좌 동)
○ (은행, 증권, 신탁, 보험, 여신전문금융, 종합금융) - 채권잔액 × Max[1%, 대손실적률,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] <추 가>	○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- (생산적 영역 외) 채권잔액 × Max[1%, 대손실적률,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] - (생산적 영역*) 채권잔액 × Max[1%, 대손실적률,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×120%] * 창업·벤처·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

<개정이유> 생산적금융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Ⅱ. 민생 · 지방 지원

1 서민 · 중산층 지원

(1) 근로장려세제(EITC)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

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(조특법 §100의3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근로장려금 지급기준*
*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</td><td>□ 총소득기준금액 인상</td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h>가구 유형</th><th>총소득기준금액</th></tr>
<tr><td>단독가구</td><td>2,200만원</td></tr>
<tr><td>홑벌이</td><td>3,200만원</td></tr>
<tr><td>맞벌이</td><td>4,400만원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가구 유형</th><th>총소득기준금액</th></tr>
<tr><td>단독가구</td><td>2,600만원</td></tr>
<tr><td>홑벌이</td><td>3,700만원</td></tr>
<tr><td>맞벌이</td><td>5,200만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(조특법 §100의5①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

○ 단독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4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400분의 165</td></tr>
<tr><td>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</td><td>165만원</td></tr>
<tr><td>900만원 이상 2,200만원 미만</td><td>165만원 - (총급여액등 - 900만원) × 1,300분의 165</td></tr>
</table>
○ 홑벌이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7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700분의 285</td></tr>
<tr><td>700만원 이상 1,400만원 미만</td><td>285만원</td></tr>
<tr><td>1,400만원 이상 3,200만원 미만</td><td>285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400만원) × 1,800분의 285</td></tr>
</table>
○ 맞벌이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8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800분의 330</td></tr>
<tr><td>800만원 이상 1,700만원 미만</td><td>330만원</td></tr>
<tr><td>1,700만원 이상 4,400만원 미만</td><td>33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700만원) × 2,700분의 330</td></tr>
</table></td><td>□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

○ 단독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4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400분의 180</td></tr>
<tr><td>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</td><td>180만원</td></tr>
<tr><td>900만원 이상 2,600만원 미만</td><td>180만원 - (총급여액등 - 900만원) × 1,700분의 180</td></tr>
</table>
○ 홑벌이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7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700분의 310</td></tr>
<tr><td>700만원 이상 1,400만원 미만</td><td>310만원</td></tr>
<tr><td>1,400만원 이상 3,700만원 미만</td><td>31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400만원) × 2,300분의 310</td></tr>
</table>
○ 맞벌이 가구
<table>
<tr><th>총급여액등</th><th>근로장려금</th></tr>
<tr><td>800만원 미만</td><td>총급여액등 × 800분의 360</td></tr>
<tr><td>800만원 이상 1,800만원 미만</td><td>360만원</td></tr>
<tr><td>1,800만원 이상 5,200만원 미만</td><td>36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800만원) × 3,400분의 36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(2)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(조특법 §95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월세세액공제	□ 공제율·한도 확대
○ (대상) 총급여 8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	○ (좌 동)
○ (공제율) 15%	
-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 : 17%	
<추 가>	- 청년* : 17% (~'29.12.31.) * 15~34세
○ (공제대상 월세 한도) 연 1,000만원	○ 연 1,000만원 → 1,200만원

<개정이유> 주거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

(3)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(소득법 §50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본공제*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 소득요건 *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	□ 소득요건 완화
○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	○ 소득금액 100만원 → 300만원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	- 총급여 500만원 → 750만원

<개정이유>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(4)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(조특법 §87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○ (대상) 근로소득자*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* 소득요건: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○ (특례) 납입금액*의 4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* 납입한도: 연 300만원 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□ 상시화 ○ (좌 동) <삭 제>

<개정이유> 무주택근로자 주거 안정 지속 지원

(5)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(소득법 §129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○ (원천징수 대상) - 의료보건용역(의사·간호사 등) - 인적용역(저술·강연·배달 등) ○ (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) - 외국인 프로선수: 20% -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*: 3% *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, 방문판매업자,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 완료 - 기타 인적용역: 3%	□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○ (좌 동) - 3% → 2%

<개정이유>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6)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(조특법 §122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	□ 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**대상**) 조특법상 성실사업자, 성실신고확인대상자 *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	
○ (**공제율**) - (**의료비**) 사업소득금액 3% 초과 금액의 15%(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 - (**교육비**) 15% - (**월세**) 15% ▪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: 17%	○ (좌 동)
<추 가>	▪ **청년*: 17%** * 15~34세
○ (**공제대상 월세 한도**) **연 1,000만원**	○ **연 1,000만원 → 1,200만원**
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○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성실사업자 등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

(7)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(소득법 §2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	□ 소규모주택특례 적용기한 연장
○ (**수입금액**)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·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* * (보증금등 – 3억원)의 적수 x 60/100 x 1/365 x 이자율 – 수입이자 등 ○ (**소규모주택특례**) 소규모주택*은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 *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40m^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	○ (좌 동)
- (적용기한) '26.12.31.	- '29.12.31.

<개정이유>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

(8)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11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**감면액**)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/㎏(23.39원/ℓ)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

(9)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(부가법 §42)

현 행	개 정 안
□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* **우대** *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	□ **적용기한 연장**
○ (**대상사업자**)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○ (**대상업종**) 음식점업 ○ (**우대공제율**) 9/109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○ **'28.12.31.**

<개정이유> 외식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

(10)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99의6·§99의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, 납기 연장 등 특례**	□ **적용기한 연장**
○ (**대상**) 재기중소기업인* *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○ (**특례**) 압류·매각 유예, 재창업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,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○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재기중소기업인 지원

(11)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(상증법 §52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	□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
○ (**대상**) 장애인, 장애아동, 희귀성난치질환자 등 ○ (**특례**) 자익신탁*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또는 타익신탁**에 따른 수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* 장애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 ** 타인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	○ (좌 동)
○ (**한도**)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 가액을 합산하여 **5억원**	○ **5억원 → 10억원**

<개정이유>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(12)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

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(조특법 §66·§67·§68)

현 행	개 정 안
□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	□ 과세특례 상시화 및 양도소득과세 합리화
○ (법인세) 소득 종류별*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* (전액 면제) 식량작물재배업	○ (좌 동)
○ (배당소득세) 조합원·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 * (전액 면제) 식량작물재배업	
○ (양도소득세)	
❶ (이월과세*)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 농지등 부동산 현물출자 * 토지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,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	
▪ (사후관리) 출자 후 3년 내 주식·출자지분의 50% 이상 처분시 추징(이자상당액 포함)	
❷ (세액감면)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·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 현물출자	❷ 이월과세로 전환
▪ (사후관리)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(이자상당액 포함)	▪ 출자 후 3년 내 주식·출자지분의 50% 이상 처분시 추징(이자상당액 포함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(조특법 §69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축사용지**에 대한 **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	□ **상시화**
○ (**대상**)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○ (**특례**)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% 감면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	<삭 제>

<개정이유>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

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(조특법 §69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어업용 토지·건물**에 대한 **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	□ **상시화**
○ (**대상**)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·건물 ○ (**특례**) 어업용 토지·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% 감면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	<삭 제>

<개정이유>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·건물 처분 지원

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□ 상시화
○ (대상)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업·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·작업 대행용역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농어민 지원

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(조특법 §106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□ 상시화
○ (대상)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농어민 지원

⑥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6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* 면제	□ 적용기한 연장
*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등	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농어민 지원

(13)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

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(관세법 §241③, 관세령 §247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고지연가산세*	□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가산세 강화
* 과세가격 × 0.5~2% 부과	
ㅇ (**대상물품**)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물품* 및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**	ㅇ (좌 동)
* (관세청 고시) 할당관세, 긴급수급조정 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 등 **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	
ㅇ (**부과요건**) 물품의 보세구역 등 반입·장치일로부터 **30일 이내** 수입·반송신고 불이행	
<단서 추가>	- **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: 30일 → 20일**
ㅇ (**부과한도**) **500만원**	ㅇ (좌 동)
<단서 추가>	- **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: 500만원 → 1,000만원**

<개정이유>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(관세법 §177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반출명령 대상 및 의무자	□ 대상 및 의무자 확대
ㅇ (명령대상) -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ㅇ (좌 동)
<추 가>	- **원활한 물자수급**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**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**의 **반출**을 **요청**한 경우
ㅇ (의무자) - 특허보세구역 운영인	ㅇ (좌 동)
<추 가>	- **화주**

<개정이유>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

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(관세법 §277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반출명령 불이행시 **과태료**	□ **과태료 부과금액 상향**
ㅇ 100만원 이하	ㅇ (좌 동)
<신 설>	ㅇ (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) 500만원 이하

<개정이유>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

2 청년 및 혼인·출산 지원

(1) 청년의 퇴직연금(IRP)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(소득법 §59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○ (공제율) 12% - 총급여액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 : 15% <추 가>	□ 청년 공제율 상향 ○ (좌 동) - 청년* : 15% * 15~34세

<개정이유>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(2)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	□ 상시화 및 적용대상 추가
ㅇ (대상) -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·운영하는 행복기숙사	ㅇ (좌 동)
<추 가>	- **한국장학재단**이 건립·운영하는 기숙사
ㅇ (면제대상 용역) - 시설관리운영권 -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**'28.12.31.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**	<삭 제>

<개정이유>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91의19)

현 행	개 정 안
□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 등	○ (좌 동)
○ (특례)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	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군장병 목돈마련 지원

(4) 학교·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학생 및 공장·광산·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학생 및 공장 종업원 등의 식비 부담 경감

(5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
(소득법 §52, 소득령 §112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	□ 적용대상 확대
○ (대상) ❶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※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적용 가능	○ (좌 동)
<추 가>	❷ **다음 요건**을 모두 충족하는 **"세대주의 배우자"**인 근로자 (ⅰ) **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** (ⅱ) **배우자**와 **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***이 **무주택자일 것** *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
○ (**특례**) 주택임차차입금의 **원리금 상환액 40% 공제**	○ (좌 동)
○ (**공제한도**) **400만원**	○ ❶ + ❷ **합산 400만원**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6)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
(조특법 §111의2, 조특령 §112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	□ 지원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지원대상) 1,000cc 미만 경형승용·승합차 소유주	○ (좌 동)
○ (요건)	○ 혼인으로 인한 차별 해소 및 차량 소유대수 요건 신설
-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 이하	- (좌 동)
<단서 신설>	▪ '26.8월 이후 혼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합계 또는 경형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
<추 가>	-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자동차*의 합계가 2대 이하 *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이륜차 등
○ (환급액) 휘발유·경유: 250원/ℓ, LPG부탄: 161원/ℓ(전액)	○ (좌 동)
○ (한도) 연간 30만원	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(혼인 차별해소)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
(차량 소유요건) '28.1.1.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

(7)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근로소득**에서 **비과세**되는 **출산수당**	□ **비과세 적용기간 확대**
○ (**대상**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※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- 근로자 본인·배우자 출산 관련 -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- **자녀 출생일** 이후 2년 이내	○ (좌 동) - **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** 이후 2년 이내
○ (**제한**) 자녀당 최대 2회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출산·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(8)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근로소득·종교인소득**에서 **비과세**되는 **보육수당**	□ **비과세 대상 확대**
○ (**대상**) - 6세 이하 자녀 <추 가>	○ (좌 동) **- 6세 이하 위탁아동**
○ (**한도**) 자녀 1인당 월 20만원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위탁아동 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3 지방주도성장 강화

(1) R&D,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(조특법 §10·§24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□ 공제율 지방우대: 기준 공제율* × 지방우대계수
* (현행) R&D세액공제(2~40%),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(1~30%)
○ 지방우대계수
<table>
<tr><th>구분*</th><th>계수</th></tr>
<tr><td>❶ 수도권</td><td>1.0</td></tr>
<tr><td>❷ 비수도권 광역시 등, 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1.1</td></tr>
<tr><td>❸ 기타 비수도권,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</td><td>1.3</td></tr>
<tr><td>❹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1.5</td></tr>
</table>
*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서울과의 거리,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○ 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) 50%
○ (지역별 구분경리 의무화) 지방우대 적용을 위해 ❶~❹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R&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

(2)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30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

○ (대상) 청년*·고령자·장애인·경력단절근로자
* 15~34세

○ (특례)
- 청년: 5년간 90% 감면
- 고령자·장애인·경력단절 근로자: 3년간 70% 감면
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</td><td>□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

○ (좌 동)

○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우대
<table><tr><th>구분*</th><th colspan="2">청년</th><th colspan="2">고령자 등**</th></tr><tr><td>❶ 수도권</td><td colspan="2">5년 90%</td><td colspan="2">3년 70%</td></tr><tr><td>❷ 비수도권 광역시 등, 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6년</td><td>90%</td><td>3년</td><td>75%</td></tr><tr><td>❸ 기타 비수도권,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</td><td>7년</td><td>90%</td><td>3년</td><td>80%</td></tr><tr><td>❹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10년</td><td>90%</td><td>3년</td><td>90%</td></tr></table>*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서울과의 거리,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** 고령자(60세 이상)·장애인·경력단절근로자

○ ’29.12.31.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’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개정 규정 적용

(3)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(소득령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근로소득**으로 **비과세**되는 **실비변상적 급여**의 범위	□ **적용대상 추가**
ㅇ 숙직료, 여비(자차운전시 월 20만 원),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,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, 교원,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ㅇ 법령 등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	ㅇ (좌 동)
<추 가>	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**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** (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) -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**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**하거나,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**신·증설 투자** (대체투자 제외) - 해당 **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·증설 투자 완료일**로부터 **3년 이내에** 수도권 지역에서 근로 중인 **근로자**가 해당 사업장으로 **근무지를 변경** - 근로자의 **근무지 변경일**부터 **3년 이내에 지급** - 사내 공통 **지급규정**에 따라 지급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(4)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(조특법 §58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

○ (기부대상)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

○ (세액공제율)
- (10만원 이하) 110분의 100
- (10만원 ~ 20만원) 40%
- (20만원 ~ 2천만원) 15%

○ (기부한도) 2천만원</td><td>□ 세액공제 지방 우대

○ (좌 동)

-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지방 우대

<table>
<tr><th>구분*</th><th>10만원 ~ 20만원</th><th>20만원 ~ 2천만원</th></tr>
<tr><td>❶ 수도권</td><td rowspan="2">40%</td><td rowspan="3">15%</td></tr>
<tr><td>❷ 비수도권 광역시 등, 수도권 우대지역</td></tr>
<tr><td>❸ 기타 비수도권,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</td><td rowspan="2">50%</td></tr>
<tr><td>❹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</td><td>25%</td></tr>
</table>

*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서울과의 거리, 인구 및 경제·사회여건 등 반영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
○ (좌 동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(5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(조특법 §6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

○ (특례)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감면

- (지역구분) 수도권(과밀·일반), 비수도권

- (우대유형) 벤처·에너지신기술·청년·생계형 우대</td><td>□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등

○ 비수도권 세분화·감면율 상향 및 우대유형 추가

- (지방우대)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 상향

- (우대유형) 점프업* 중소기업, 청년 신산업** 중소기업 추가

*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, 투자유치 지원,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패키지 사업(중기부)
** 세부 업종은 중기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</td></tr>
<tr><td>

구 분	수도권		비수도권*
	과밀	일반	
중소기업	-	25%	50%
벤처	50%		
에너지 신기술	50%		
생계형**	50%	75%	100%
청년			
창업보육	50%		

*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
**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
※ 추가감면: 상시근로자증가율 × 100%

<신 설>

○ (적용기한) ’27.12.31.

</td><td>

구 분*	❶수도권		❷비수도권 광역시 등, 수도권 우대지역	❸기타 비수도권,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	❹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
	과밀	일반			
중소기업	-	25%	50%	**60%**	**70%**
벤처	50%		**60%**	**70%**	**80%**
에너지 신기술					
점프업	**50%**		**60%**	**70%**	**80%**
생계형	50%	75%	100%		
청년					
신산업	**60%**	**85%**	**100%**		
창업보육	-	**25%**	50%	**60%**	**70%**

*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서울과의 거리, 인구 및 경제·사회여건 등 반영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

○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

○ (좌 동)
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

<적용시기> (감면율) ’27.1.1. 이후 창업·지정·확인·선정 분부터 적용
(추계과세 배제)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6)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

[지방이전: 6개 특례]

- (§60, §61) **공장 대도시 밖, 본사 수도권과밀 밖 이전**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(5년) 및 분납(5년)
- (§63, §63의2) **공장·본사 지방이전** 시 최대 10년간 100% + 5년간 50% 세액감면, 양도차익 과세이연(5년) 및 분납(5년)
- (§85의8) **중소기업 공장 이전**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(5년) 및 분납(5년)
- (§104의24) **해외기업 국내복귀** 시 최대 7년간 100% + 3년간 50% 세액감면

[특구입주: 12개 특례]

- (§12의2, §121의8·9·17·20·21·22) **연구개발특구 입주,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,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,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, 금융중심지 창업, 첨단의료복합단지·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** 시 3년간 100% + 2년간 50% 세액감면
- (§64) **농공단지 입주** 시 5년간 50% 세액감면
- (§99의9, §121의33) **위기지역, 기회발전특구 창업** 시 5년간 100% + 2년간 50% 세액감면
- (§121의34) **기회발전특구 이전** 시 신규 사업용부동산 처분일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
- (§121의36, 신설) **광주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창업** 시 5년간 100% + 2년간 50% 세액감면

① 감면요건 합리화(조특법 §60·§61·§128)

현 행	개 정 안
□ 이전등기일 전 3년*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 * 중소기업 공장 또는 해외기업 2년	□ 요건 적용특례 추가
○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등 (§63·63의2, §85의8, §104의24, §121의34)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**(§60·61)
□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	□ 배제되는 세제지원 추가
○ 세액공제 특례(§7의2, §7의4 등)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**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② 사후관리(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) 강화(조특법 §146② 신설)

1) 위장이전 사후관리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지방이전 후 **수도권**에 **사실상 동일 사업장*** 설치한 경우 **지방이전 특례**** **세제지원 추징***** **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** * 1) (공장) 이전한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2) (본사) 본사 또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 ** (현행) §63·63의2 + **(추가) §60·61** *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(동일사업장 설치 과세연도 및 이전 4개 과세연도로서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한정)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수도권 공장·본사·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

2) 상시근로자 수 유지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**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** 시 **세제지원*** **추징**** **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** * (현행) §12의2, §64, §99의9, §121의8·9·17·20·21·22·33 **(추가) §60, §61, §85의8, §104의24, §121의34, §121의36** 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(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개년)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

<개정이유> 고용안정 유도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감면한도 적용(조특법 §13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* 한도: ❶ + ❷ * (현행) §12의2, §63, §63의2, §64, §99의9, §121의8·9·17·20·21·22·33 **(추가) §104의24, §121의36** ❶ **해당 지역 투자누계액**(사업용 유형자산)**의 70%**(특구 50%) ❷ 당해연도 **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** - 청년, 서비스업, 연구개발 우수 인력*: 2,000만원 * §12의2만 해당

<개정이유> 지역투자·고용 유도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(조특법 §145·§146②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**에 대해 **지역 환류 의무화** ○ (**환류의무**) **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**에 **환류한 금액(❶~❹ 합계액)이 감면세액*의 30% 이상**(기준금액)일 것 * 소득세·법인세 감면세액 - 농어촌특별세액 ❶ (**투자**) **해당 지역 투자누계액**(사업용 유형자산) ❷ (**R&D**) **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** *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❸ (**고용**) **신규 채용**하여 **해당 사업장에서 근무**하는 **상시근로자**에게 지급된 **인건비**(❷는 제외) ❹ (**상생**) **해당 지역 소재 협력중소기업**에 대한 **출연금*** *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○ (**추징기준**) **환류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미달액 추징** ○ (**검증방법**) 해당 기업은 **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**와 함께 **환류규모 입증자료** 제출

<개정이유> 세제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·특구입주 특례 확대(조특법 §132)

현 행	개 정 안
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지방이전·특구입주 조세특례	□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에 확대 적용
○ 공장 대도시 밖, 본사 수도권과밀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 특례(§60·61) ○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* +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 특례(§63) * 중소기업 수도권 공장이전만 적용 ○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(§63의2④)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*** (§63의2) * 100%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○ **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**(§85의8) ○ **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***(§104의24) * 100%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
○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* (§12의2, §64, §99의9, §121의8·9·17·20·21·22·33) * 100%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**(§121의34) ○ **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***(§121의36) * 100%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

<개정이유> 과도한 세제지원 방지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7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(조특법 §121의36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** ○ (**대상**) 광주특별시 **투자진흥지구·문화산업진흥지구**에서 **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**하는 기업* * 업종, 투자금액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○ (**특례**) 소득세·법인세 **5년 100% + 2년 50%** 감면 ○ (**사후관리**) **폐업** 및 **특구 외로 이전** 시 감면세액 **추징** ○ (**적용기한**)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(8)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21의34)

현 행	개 정 안
□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*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·양도소득세 특례 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○ (특례)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3년 이상(중소기업 2년) 사업 영위 -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* 양도 * 본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, 데이터센터 -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* * ①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또는 ②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	□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Ⅲ.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

1 부동산세제 합리화

(1)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

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(소득법 §95②·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·토지 등 장기보유 및 거주에 따른 소득공제	□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
○ (명칭) 장기보유특별공제	❶ (명칭) 장기거주 소득공제
- (대상) 토지, 건물(주택 포함), 조합원입주권	- (대상) 주택, 조합원입주권*
	*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
<신 설>	❷ (명칭) 장기보유 소득공제
	- (대상) 토지, 건물(주택 외), 조합원입주권*
	*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

<개정이유> 제도개편에 따른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(소득법 §95②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1세대 1주택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

○ (공제액) 양도차익* × 공제율

* (양도가액 – 필요경비) ×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

○ (공제율) ❶ + ❷

※ (기본요건) 3년 이상 보유 + 2년 이상 거주

❶ (거주) 연 4%, 최대 40%

❷ (보유) 연 4%, 최대 40%</td><td>□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

○ (좌 동)

<table>
<tr><th>구분 \ 양도시점</th><th>’27.12.31. 까지</th><th>’28.1.1.~ ’28.12.31.</th><th>’29.1.1. 부터</th></tr>
<tr><td>❶거주</td><td>연 4%
최대 40%</td><td>연 6%
최대 60%</td><td>연 8%
최대 80%</td></tr>
<tr><td>❷보유</td><td>연 4%
최대 40%</td><td>연 2%
최대 20%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거주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(소득법 §95②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

○ (공제액) 양도차익* × 공제율
* 양도가액 - 필요경비

○ (공제율) 보유공제율

※ (기본요건) 3년 이상 보유
- 연 2%, 최대 30%</td><td>□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

○ (좌 동)

○ (’28년)❶거주공제율과 ❷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 → (’29년 이후)❶거주공제율

※ (좌 동)

<table>
<tr><th>양도시점 / 구분</th><th>’27.12.31. 까지</th><th>’28.1.1.~ ’28.12.31.</th><th>’29.1.1. 부터</th></tr>
<tr><td>❶거주*</td><td>-</td><td>연 2%
최대 30%</td><td>연 2%
최대 30%</td></tr>
<tr><td>❷보유</td><td>연 2%
최대 30%</td><td>연 1%
최대 15%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*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적용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거주 중심으로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(소득법 §95⑥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	□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
○ (공제액) 양도차익* × 공제율 * 양도가액 – 필요경비 단,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에 해당하는 분	○ (좌 동)
<신 설>	○ (공제한도) ❶과 ❷ 각각 적용 ❶ (인별 연간) ('28년) 20억원 → ('29년 이후) 10억원 ❷ (양도 물건별*) ('28년) 20억원 → ('29년 이후) 10억원 *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도 적용

<개정이유> 공제수준 합리화 통한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(종부법 §7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**	□ **과세대상 조정**
ㅇ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	ㅇ (좌 동)
<신 설>	❶ **(1세대 1주택자)** 주택가액(공시가격) 합계액 **14억원 초과** (시가 약 20억원 초과)
	❷ **(❶ 외)** 주택가액(공시가격) 합계액 **9억원 초과** (시가 약 13억원 초과)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(종부법 §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* 기본공제금액 * 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산액 – 기본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	□ 기본공제금액 조정
○ (개인)	○ (좌 동)
❶ (1세대 1주택자) 12억원	❶ (1세대 1주택자)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▪ (거주) 14억원 ▪ (비거주) 9억원
❷ (❶ 외) 9억원	❷ 4억원 + (5억원× $\frac{\text{거주주택 공시가격}}{\text{주택 공시가격 합계액}}$)
○ (법인) 기본공제 없음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

(종부법 §8①·§13①·②, 종부령 §2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분·토지분 종합부동산세* 공정시장가액비율 * 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산액 – 기본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○ 60% ~ 100%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	□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○ 60% → 70%
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○ 60%	□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❶ (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*) ('27년) 70% → ('28년 이후) 80% * 1세대 1주택자 제외 ❷ (❶ 외) 70%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5)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(종부법 §9①·②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과 세 표 준</th><th colspan="2">세율</th></tr>
<tr><th>2주택 이하*</th><th>3주택 이상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0.5%</td></tr>
<tr><td>3억원 초과 6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0.7%</td></tr>
<tr><td>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1.0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</td><td>1.3%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td><td>1.5%</td><td>3.0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</td><td>2.0%</td><td>4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2.7%</td><td>5.0%</td></tr>
<tr><td>법인*</td><td>2.7%</td><td>5.0%</td></tr>
</table>
* 공익법인 등 : 0.5~2.7% / 0.5~5.0%</td><td>□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 폐지 및 과세표준 6~12억원 구간 세율 인상

○ ‘27년: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과 세 표 준</th><th colspan="2">세율</th></tr>
<tr><th>2주택 이하</th><th>3주택 이상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0.5%</td></tr>
<tr><td>3억원 초과 6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0.7%</td></tr>
<tr><td>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2">1.3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</td><td>1.5%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td><td>2.0%</td><td>3.0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</td><td>2.7%</td><td>4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3.5%</td><td>5.0%</td></tr>
<tr><td>법인*</td><td>3.5%</td><td>5.0%</td></tr>
</table>
* 공익법인 등 : 0.5~3.5% / 0.5~5.0%

○ ’28년 이후:
<table>
<tr><th>과 세 표 준</th><th>세 율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*</td><td>0.5%</td></tr>
<tr><td>3억원 초과 6억원 이하</td><td>0.7%</td></tr>
<tr><td>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</td><td>1.3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td><td>3.0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</td><td>4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5.0%</td></tr>
<tr><td>법인*</td><td>5.0%</td></tr>
</table>
* 공익법인 등 : 0.5~5.0%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(종부법 §9⑤·⑧·⑨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

○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
<table><tr><th>연령</th><th>공제율</th></tr><tr><td>60~65세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65~70세</td><td>30%</td></tr><tr><td>70세 이상</td><td>40%</td></tr></table>
○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
<table><tr><th>보유기간</th><th>공제율</th></tr><tr><td>5~10년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10~15년</td><td>40%</td></tr><tr><td>15년 이상</td><td>50%</td></tr></table></td><td>□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(보유공제)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(거주공제)로 전환

○ (좌 동)

○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
- (’27년) ❶보유공제(거주공제의 1/2)와 ❷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
- (’28년 이후) ❷거주공제만 적용
<table><tr><th>보유/거주기간</th><th>❶보유공제</th><th>❷거주공제</th></tr><tr><td>5~10년</td><td>10%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10~15년</td><td>20%</td><td>40%</td></tr><tr><td>15년 이상</td><td>25%</td><td>50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□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

○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% 한도

<신 설></td><td>□ 금액 한도 신설

○ (좌 동)

○ (금액 한도)
(’27년) 800만원 → (’28년 이후) 600만원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(종부법 §10·§15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* *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(재산세+종합부동산세)의 150%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○ 150%	□ 세부담 상한 조정 ○ 150% → 200%

<개정이유> 세부담 적정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

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(종부법 §20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	□ 납부 유예 소득요건 완화 및 확대
○ ❶~❹ 모두 충족	○ ❶~❹ 모두 충족 또는 ❶+❷+❺ 충족
❶ 1세대 1주택자	- (좌 동)
❷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	
❸ 만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	
❹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	❹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)
<신 설>	❺ (ⅰ)·(ⅱ) 모두 충족 (ⅰ)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 (ⅱ)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* 비중 10% 이상 * 재산세+종합부동산세 (부가세(surtax) 포함)

<개정이유> 납세자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(종부법 §20의2⑥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납부유예*** **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** *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처분시점 등까지 납부를 유예 ○ (**요건**) **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** ○ (**특례**) 납부유예 기간의 **이자상당가산액*** **감면** * 납부유예 세액 × 국세기본법상 이자율(3.1%) ○ (**한도**)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**보증보험 보험료**

<개정이유> 납부유예 제도 활성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(소득법 §103)

현 행	개 정 안
□ 양도소득 기본공제	□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
○ 소득 종류별* 양도소득금액에서 **연간 250만원** 공제 *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<단서 신설>	○ (좌 동) - 단, **10년 이상 거주**한 양도가액 **30억원** 이하의 **1세대 1주택** 양도시 **연간 2,500만원** 공제* *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※ 인별·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(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),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

<개정이유>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71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고령 1주택자**에 대한 **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 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양도일 기준 **만 65세 이상** - **1세대 1주택자**가 양도 - **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**이며 보유기간 중 총 **5년 이상 거주**한 **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** - **특수관계인*** **외**의 **제3자**에게 양도 * 직계비속 등 친족, 지배법인 등 - 양도 후 6개월 내 **비수도권 지역**으로 **이주*** *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○ (**특례**) ('27년) **50%**(**5억원 한도**) → ('28년) **30%**(**3억원 한도**) 양도소득세 **감면*** *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○ (**사후관리**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개월 내 **감면세액·이자상당가산액**(1일 0.022%) 납부 - 양도 후 **6개월** 내 **비수도권 미이주*** *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- 양도 후 **5년** 내 **수도권 주택 취득** 또는 **수도권으로 이주*** *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- 감면 받고 처분한 **주택**을 양도 후 **5년** 내 **재매수*** *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○ (**적용기한**) **'28.12.31.**

<개정이유>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

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71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특례*	□ 적용대상지역·주택가액 상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*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 적용	
○ (주택소재지*)	○ (좌 동)
*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·군·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	
❶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*) 인구감소지역	
*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	
❷ 수도권(접경지역)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*) 인구감소관심지역	
*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	
<추 가>	❸ ❶, ❷ 외의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) 지역*
	* 세부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
○ (주택가액 상한) ※ 공시가격 기준	○ (좌 동)
❶ : 9억원	
❷ : 4억원	❷ : 4억원 → 6억원
<추 가>	❸ : 4억원
○ (적용기간) '24.1.4. ~ '26.12.31. 중 취득	○ '24.1.4. ~ '29.12.31. 중 취득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 (소득령 §167의3①·종부령 §4의3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특례*	□ 적용대상지역·주택가액 상한 확대
* (양도세)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(종부세)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	
○ (주택소재지*)	○ (좌 동)
*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·군·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	
❶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*) 인구감소지역	
*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	
❷ 수도권(접경지역)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*) 인구감소관심지역	
*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	
<추 가>	❸ ❶, ❷ 외의 비수도권(광역시 제외) 지역* * 세부 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
○ (주택가액 상한) ※ 공시가격 기준	○ (좌 동)
❶ : 9억원	
❷ : 4억원	❷ : 4억원 → 6억원
<추 가>	❸ : 4억원
○ (적용기간) ’26.1.1. 이후 취득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(12)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(소득법 §104⑦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

○ (1세대 2주택)
기본세율(6~45%) + 20%p

<단서 신설>

○ (1세대 3주택 이상)
기본세율(6~45%) + 30%p

<단서 신설></td><td>□ 중과세율 한시 완화

○ (좌 동)

- 단,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*
*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
<table><tr><th>양도기간</th><th>중과세율</th></tr><tr><td>'27.1.1.~'27.12.31.</td><td>+5%p</td></tr><tr><td>'28.1.1.~'28.12.31.</td><td>+10%p</td></tr></table>
○ (좌 동)

- 단,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*
*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
<table><tr><th>양도기간</th><th>중과세율</th></tr><tr><td>'27.1.1.~'27.12.31.</td><td>+10%p</td></tr><tr><td>'28.1.1.~'28.12.31.</td><td>+15%p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<특례규정> 중과세율이 적용된 '26년 양도분*도 '27.1.1. 이후 예정·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(2주택 +5%p, 3주택 이상 +10%p) 적용

*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

(13)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(소득령 §15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일시적 1세대 2주택자**에 대한 **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*** 요건 *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	□ **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**
○ (**신규주택 취득기간**)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○ (**종전주택 양도기한**)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3년 이내**	○ (좌 동)
<**단서 신설**>	- 단, **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***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2년 이내** *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

<개정이유>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6.10.1.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’26.8.3. 이전 주택·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

※ ‘26년 중 개정 예정

(14)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

(종부령 §4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일시적 1세대 2주택자**에 대한 **1세대 1주택 특례*** **요건** *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12억원,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 적용	□ **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**
ㅇ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**3년 이내** 종전주택 양도	ㅇ (좌 동)
<단서 신설>	- 단, **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***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2년 이내** *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

<개정이유>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8.3. 이전 주택·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

※ '26년 중 개정 예정

(15)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

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(소득령 §167의3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* 제외 대상 * (2주택) 기본세율(6~45%)+20%p, (3주택 이상) 기본세율(6~45%)+30%p ○ 지방저가주택 ○ 장기어린이집(5년 이상) ○ 민간매입임대주택(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'20.7.11.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)	□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○ (좌 동)
<단서 신설>	- 단, **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* 아파트**의 경우 **'27.12.31.** 이전 양도분**으로 한정 *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** ①'27.1.1.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, ②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, ③재건축·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**①의무임대종료일**, **②지정 공고일**, **③이전 고시일** 중 **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**

<개정이유>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6.10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※ '26년 중 개정 예정

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(법인령 §92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 양도소득**에 대한 **법인세 추가과세*** **배제 대상** * 주택 양도소득에 20% 세율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 ㅇ 임직원 사택(10년 이상) ㅇ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(취득일부터 3년 내) ㅇ 민간매입임대주택(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'20.7.11.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)	□ **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설정** ㅇ (좌 동)
<단서 신설>	- 단, **임대의무기간 종료** 후 **자동 등록말소**된 **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*** **아파트**의 경우 **'27.12.31.**** **이전 양도분**으로 한정 *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** ①'27.1.1.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, ②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, ③재건축·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①**의무임대종료일**, ②**지정 공고일**, ③**이전 고시일** 중 **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**

<개정이유>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6.10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※ '26년 중 개정 예정

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
(조특법 §97의11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**에 대한 **과세특례** ○ (대상) **임대의무기간 종료** 후 **자동 등록말소**된 **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*** *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○ (특례) **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**시 **❶중과·추과과세 세율 완화** 및 **❷장특공제 우대 축소** **❶ 중과·추가과세 세율의 1/2** 적용 - (개인) **2주택 +10%p, 3주택 이상 +15%p** (기본세율 6~45%에 가산) - (**법인**) **10%**(법인세 추가 과세) **❷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**에 **장특공제율 30%** 적용 (현행 우대공제율: 50%) * 장특공제 우대 30% 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장특공제 우대 배제 ○ (적용기간) **'28.1.1.~'28.12.31. 양도분*** * ①'27.1.1.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, ②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, ③재건축·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①**의무임대종료일**, ②**지정 공고일**, ③**이전고시일** 중 **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 경과 2년 이내**

<개정이유>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6)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(소득령 §155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	□ 특례 적용요건 추가
○ (요건) - 주택 취득 후 체결*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*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❶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· 임대료 증가율이 5% 이내 ❷ '21.12.20.~'26.12.31.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	○ (좌 동)
<추 가>	- 다음 기한 이내에 **양도** ❶ **'26.12.31.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: '27.12.31.** ❷ **'27.1.1.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: 계약 종료 후 1년**이 되는 날과 **'29.12.31. 중 빠른 날**
○ (**특례**)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* 면제 *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(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) ②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(최대 80%)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6.10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※ '26년 중 개정 예정

(17) 임대주택·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

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(조특법 §97)

현 행	개 정 안
□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	□ 양도기한 설정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국민주택규모(85m²) 이하 - '86.1.1.~'00.12.31. 중 신축 또는 '85.12.31. 이전 신축된 '86.1.1. 미입주 공동주택 - '00.12.31. 이전 임대 개시 - 5년 이상 임대	○ (좌 동)
<추 가>	- 다음 기한 이내 양도 ▪ (수도권 아파트) '29.12.31. ▪ (수도권 아파트 외) '31.12.31.
○ (감면율) ❶ 10년 이상 임대,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,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*: 100% * '95.1.1. 이후 취득·임대개시 및 취득 당시 미입주주택에 한정 ❷ ❶ 외: 50%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(조특법 §9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신축임대주택**에 대한 **양도소득세 감면**	□ **양도기한 설정**
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	○ (좌 동)
- 국민주택규모(85m²) 이하	
- 다음 중 하나의 주택	
▪ (**건설임대**) '99.8.20.~'01.12.31. 중 신축 또는 '99.8.19.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	
▪ (**매입임대**) '99.8.20. 이후 신축 또는 '99.8.19.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 중 '99.8.20.~'01.12.31. 중 취득·임대 개시	
- 5년 이상 임대	
<추 가>	- 다음 **기한 이내 양도**
	▪ (**수도권 아파트**) '29.12.31.
	▪ (**수도권 아파트 외**) '31.12.31.
○ (**감면율**) 100%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(조특법 §9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미분양주택**에 대한 **과세특례**	□ **양도기한 설정**
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 - '95.11.1.~'97.12.31. 또는 '98.3.1.~'98.12.31. 중 취득 - 5년 이상 보유·임대	○ (좌 동)
<추 가>	- 다음 **기한 이내 양도** ▪ (**수도권 아파트**) **'29.12.31.** ▪ (**수도권 아파트 외**) **'31.12.31.**
○ (**특례**) 다음 중 선택 - 양도소득세율 20% 적용 - 종합소득세로 납부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(조특법 §98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	□ 양도기한 설정
○ (요건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취득 - '09.3.16.~'10.2.11. 기간 중 미분양주택* 외 주택 취득 * 조특법 §98의3①	○ (좌 동)
<추 가>	- '28.12.31. 이전 양도
○ (감면율) 10%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

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(조특법 §97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장기임대주택**에 대한 **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	□ **비거주자 적용 제외**
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	○ (좌 동)
- 거주자 또는 **비거주자***	- **거주자** (비거주자 제외)
* 국내에 주소·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	
- '18.3.31.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	○ (좌 동)
▪ (**매입임대**) 5년 이상 임대, 기준시가 6억원(비수도권 3억원) 이하, 임대료등 증가율 5% 이내	
▪ (**건설임대**) 대지면적 298㎡·주택 연면적 149㎡ 이하, 2호 이상, 5년 이상 임대·분양전환, 기준시가 6억원 이내, 임대료등 증가율 5% 이내	
- 6년 이상 임대	
○ (**특례**) 장특공제 계산시 보유기간별 공제율(6~30%)에 임대기간별 2~10%p* 가산	
* (6~7년) 2% (7~8년) 4% (8~9년) 6% (9~10년) 8% (10년~) 10%	

<개정이유>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9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8)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

① 취학·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(소득법 §95⑦, 소득령 §159의4②·③ 신설, 소득칙 §61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○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※ 단,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	□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○ (좌 동)
<신 설>	□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* * 최장 인정기간: 3년 ○ (요건) ❶~❸ 모두 충족 ❶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일 것 ❷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- 고등·대학교 취학 - 직장변경, 전근 등 근무상 형편 - 1년 이상 치료·요양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-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-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-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-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

	❸ 타 시·군*으로 주거이전** *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·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·도농복합형태 시지역·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·면지역간 이전 포함 **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- 단,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 해외로 주거이전 ※ **거주기간 인정**은 **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**.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

<개정이유>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
(소득법 §95⑦, 소득령 §159의4④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기간 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※ 단,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	□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ㅇ (좌 동)
<신 설>	□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ㅇ 다음 ❶특례주택의 ❷대상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 ❶ (특례주택*) *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 - 인구감소(관심)지역 주택 - 농어촌주택* 및 고향주택 * 조특법 §99의4에 따른 주택 - 지방저가주택 - 소형 신축주택 * 전용면적 60m² 이하 - 준공 후 미분양 주택 ❷ (대상기간) 기존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※ **거주기간 인정**은 **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**.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

<개정이유>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(소득법 §95⑧, 소득령 §159의4⑤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등록임대주택*** **임대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** * 소득령 §167의3①(2)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※ 조특법상 장특우대 미적용 가정 ○ (**공제액**) 양도차익* × 공제율 * 양도가액 - 필요경비 ○ (**공제율**) **보유**공제율 - (1주택) 연 4%, 최대 40% - (1주택 외) 연 2%, 최대 30%	□ **거주공제 전환**에 따라 **등록임대주택*** **임대기간 공제 적용 보완** * 소득령 §167의3①(2)의 중과배제 임대주택(**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**) ※ (좌 동) ○ (좌 동) ○ (**공제율**) **등록임대주택**의 **임대기간**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**거주공제율 일부** 적용 - 연 2%, 최대 30% ※ **거주기간 인정**은 **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**.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

<개정이유>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재개발·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
(소득법 §95⑨, 소득령 §159의4⑥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재개발·재건축** 등 **공사기간*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** * 조합원입주권 상태	□ **거주공제 전환**에 따라 **재개발·재건축 등 공사기간 공제 적용 보완**
ㅇ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* *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- (**공제액**) 양도차익 × 공제율 - (**공제율**) **보유**공제율* * 1주택 연 4%, 1주택 외 연 2%	ㅇ (좌 동) - (**공제율**) ❶**대상주택** ❷**공사기간**의 **50%**를 **거주기간**으로 인정하여 ❸**거주공제율** 적용 ❶ (대상주택) 관리처분계획 인가일*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*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❷ (공사기간) 관리처분계획 인가일*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*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❸ (공제율) 거주공제율 ▪ (1주택) 연 8%, 최대 80% ▪ (1주택 외) 연 2%, 최대 30% ※ **거주기간 인정**은 **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**.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

ㅇ **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**[*] *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- (**공제액**) 양도차익 × 공제율 - (**공제율**) **보유**공제율[*] * 1주택 연 4%, 1주택 외 연 2%	ㅇ (좌 동) - (**공제율**) **거주공제율** (단, '28년은 보유공제율 적용[*]) * (1주택) 보유 연 2%, 최대 20% 적용 (1주택 외) 보유 연 1%, 최대 15% 적용

<개정이유> 재개발·재건축 관련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 (소득법 §95⑫·⑬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상가 등 주택 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	□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계산방법 합리화
ㅇ (공제액) 양도차익* × 공제율 * 양도가액 - 필요경비 ㅇ (공제율) 보유공제율* * 연 2%, 최대 30% - 보유기간 :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	ㅇ (좌 동)
<추 가>	-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: ❶+❷*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 * 단, **양도시점**에 **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(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)**에 해당할 경우 **❷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**

<개정이유> 양도 전 용도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9)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

① 취학·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(종부법 §9⑩ 신설, 종부령 §4의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* * 최대 인정기간: 3년 ○ (요건) ❶~❸ 모두 충족 ❶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일 것 ❷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- 고등·대학교 취학 - 직장변경, 전근 등 근무상 형편 - 1년 이상 치료·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-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-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-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-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❸ 타 시·군*으로 주거이전** *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·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·도농복합형태 시지역·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·면지역간 이전 포함 **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- 단,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 해외로 주거이전

<개정이유>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재개발·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(종부법 §9⑩ 신설, 종부령 §4의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재개발·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 보완 ○ ❶대상주택의 ❷공사기간의 50%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❶ (대상주택) 관리처분계획 인가일*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*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❷ (공사기간) 관리처분계획 인가일*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*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

<개정이유> 거주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20)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(조특법 §97의10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공공매입임대주택** 건설을 위해 **양도**한 **토지**에 대한 **과세특례**	□ **감면율 상향, 감면한도 적용 및 적용기한 연장**
○ (**요건**)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* 공공주택사업자(LH 등)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	○ (좌 동)
○ (**특례**) 양도소득세 10% 감면	○ **10% → 15%**
<신 설>	○ (**감면한도***) **연간 2억원, 5년 합계 3억원** *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, 대토보상 과세특례,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
○ (**적용기한**) **'27.12.31.**	○ **'28.12.31.**

<개정이유>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21)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(조특법 §104의19, 종부령 §7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	□ 과세특례 대상 확대
○ (**대상**)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토지 -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	○ (좌 동)
<추 가>	**-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**
○ (**기한**)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○ (**특례**) 과세표준 합산배제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주택공급 확대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22)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

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(소득법 §95④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장기보유특별공제(장기보유 소득공제) 배제 자산	□ 배제 자산 추가
ㅇ 미등기 양도자산 ㅇ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	ㅇ (좌 동)
<추 가>	ㅇ 비사업용 토지

<개정이유>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(소득법 §104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	□ 중과세율 상향
ㅇ 소득세 기본세율(6~45%) +10%p 추가과세	ㅇ +10%p → +20%p

<개정이유>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(법인법 §55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비사업용 토지 양도**에 대한 **법인세 추가과세**	□ **추가과세 세율 상향**
ㅇ 비사업용 토지 **양도소득의 10%**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	ㅇ **10% → 20%**

<개정이유>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(종부법 §14①)

현 행

□ **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**

ㅇ 종합합산토지

* 나대지, 잡종지 등

과세표준	세율
15억원 이하	1%
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2%
45억원 초과	3%

ㅇ 별도합산토지

* 상가·공장·물류시설 부지 등

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0.5%
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0.6%
400억원 초과	0.7%

개 정 안

□ **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**

ㅇ **과표 45억원 초과** 구간 세율 인상

과세표준	세율
15억원 이하	1%
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2%
45억원 초과	**4%**

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2 가업상속공제 개편

(1)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

① 가업의 정의 신설(상증법 §18의2①, 상증령 §1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'가업'의 정의 ○ 다음에 해당하는 **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** ❶「특허법」에 따른 **특허권** ❷「부정경쟁방지법」에 따른 **영업비밀** *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,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❸「산업기술보호법」에 따른 **산업기술** * 제품·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·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,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,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·고시·공고·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, 첨단기술 등 ❹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**숙련기술** *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,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❺ ❶~❹와 **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** 또는 **경영상 노하우** ○ 다만, **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** - **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·노하우**로 사업하는 경우(프랜차이즈 등) - **부동산**을 통한 **소득, 이자·배당소득**이 **주된 소득**인 경우

<개정이유> 전문기술,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(상증법 §18의2①·별표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상 **대분류, 중분류** 기준으로 **대통령령**에서 규정 ○ **대분류** 등 기준 16개 +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* * 엔지니어링사업, 물류산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- **백년소상공인**으로 지정된 경우 **업종 요건 충족** 간주	□ 업종 조정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상 **세세분류** 기준으로 **법률**에서 규정 ○ **세세분류** 기준 **727개** * (제조업)479 (도소매업)86 (정보통신업)36 (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)27 (건설업)17 (음식점업)16 등(단,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·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) ※ (주요 제외 업종)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 등 - 백년소상공인 → **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**

<개정이유> 가업상속 공제업종 범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③ 심사위원회 신설(상증법 §18의2⑫, 상증령 §1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○ (구성) 위원장(재경부 1차관), 정부 및 민간위원* *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○ (심사사항) ❶ '가업'에 **해당**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❷ 경영기간, 사후관리기간 중 **업종 변경**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❸ **공제대상 업종**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❹ 그 밖에 **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**한 사항 ○ (❶ **관련 심사절차**) **납세자**가 **상속·증여세 신고**와 함께 **심사 자료 제출** → **과세관청**의 **사전 조사** →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**상속·증여세 결정·통지**

<개정이유> 전문기술,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(상증법 §18의2①, 상증령 §15⑥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요건	□ 기간요건 강화
○ (피상속인 요건)	○ (피상속인 요건)
- 10년 이상 계속 경영	- 30년 이상 계속 경영 ▪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*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* 30년 -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
-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%(상장법인의 경우 20%)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	- 10년 이상 → 30년* 이상 * 단,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(이하 동일하게 적용)
- 일정기간* 대표이사로 재직 * 가업영위기간 중 50% 이상,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	- (좌 동) * 가업영위기간 중 50% 이상,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등
○ (상속인 요건)	○ (상속인 요건)
-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	○ 2년 이상 → 5년 이상
-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-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-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	- (좌 동)

<개정이유> 전문기술,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(상증령 §15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제대상 토지 범위	□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
ㅇ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	ㅇ (좌 동)
- 단,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(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*를 초과하는 토지)는 제외	- 3~7배 → 2~3배*
* (상업지역) 3배, (공업지역) 4배, (도시지역 외) 7배 등	* (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) 2배, (그 외) 3배
<신 설>	- 토지 공제한도: 1㎡ 당 1,000만원

<개정이유> 토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(상증령 §15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	□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적용방식 개선
○ (업종변경)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* * 과세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 없음	○ (업종변경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* (대분류 외도 가능) * 경제환경,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,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
<신 설> ※ (겸업)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,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 허용	○ (겸업) 주업종(공제업종)-부업종(비공제업종)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*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지원 배제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(상증법 §18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	□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 상향
○ (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) 300억원	<삭 제>
○ (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) 400억원 ○ (30년 이상 경영) 600억원	○ 피상속인 경영연수×20억원 - 한도: 1,000억원

<개정이유> 장수기업 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⑧ 사후관리요건 강화(상증법 §18의2⑥, 상증령 §15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	□ 사후관리 기간 상향
○ (기간) 5년	○ 5년 → 10년 -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* 만큼 기간연장 * 30년 -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
○ (요건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징 -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 처분 -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- 근로자 수,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%에 미달하는 경우 -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-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*	○ (좌 동)
* (**예외**) **동일한 대분류 내 적용대상 업종**으로 **변경**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**추징 제외**, **대분류가 다른 적용대상 업종**으로 변경은 **평가심의위원회 심의**를 거쳐 **승인**받은 경우 **추징 제외**	* (**예외**) **적용대상 업종**으로 변경시 **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**를 거쳐 **승인**받은 경우 **추징 제외**

<개정이유> 전문기술,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(2)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(상증법 §72의2, 상증령 §69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*** **요건, 한도, 적용방식** *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·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	□ **가업상속공제 개편**에 맞춰 조정
<신 설>	○ **(정의) 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***를 보유한 기업 * 특허권, 영업비밀, 산업기술,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·노하우
○ **대분류** 기준 16개 +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* * 엔지니어링사업, 물류산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	○ **세세분류** 기준 **727개** * (제조업)479 (도소매업)86 (정보통신업)36 (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)27 (건설업)17 (음식점업)16 등(단,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·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) ※ (주요 제외 업종)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 등
- **백년소상공인**으로 지정된 경우 **업종 요건 충족** 간주	- 백년소상공인 → **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**
<신 설>	○ **(심사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*** **심사** * ①'가업' 해당 여부,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,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, ④기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
○ **(피상속인) 10년** 이상 계속 경영 등	○ **10년 이상 → 30년*** 이상 * 단,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유예 적용 시 20년 이상
○ **(상속인)** 상속개시일 전 **2년** 이상 가업에 종사 등	○ **2년 이상 → 5년 이상**

○ **(유예대상 토지)**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(건축물 바닥면적의 **3~7배***를 초과하는 토지)는 제외 * (상업지역) 3배, (공업지역) 4배, (도시지역 外) 7배 등	○ **3~7배 → 2~3배*** * (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) 2배, (그 외) 3배
<신 설>	- **(한도)** 유예대상 토지 **1㎡ 당 1,000만원**
○ **(업종변경) 대분류 내**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	○ **(업종변경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**를 거쳐 **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** 유예 허용(대분류 외도 가능) * 경제환경,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,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
<신 설> ※ (겸업)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,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	○ **(겸업) 주업종**(유예업종)-**부업종**(비유예업종)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**안분**하여 **주업종 해당 부분**만 **납부유예** 적용 ※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
○ **(사후관리) 5년**	○ **5년 → 10년** *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유예 적용 시 부족기간(30년 -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)만큼 기간 연장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(3)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(조특법 §30의6, 조특령 §27의6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* 요건, 한도, 적용방식 *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%, 120억원 초과금액은 2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(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)	□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
<신 설>	○ (정의) 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*를 보유한 기업 * 특허권, 영업비밀, 산업기술,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·노하우
○ 대분류 등 기준 16개 +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* * 엔지니어링사업, 물류산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	○ 세세분류 기준 727개 * (제조업)479 (도소매업)86 (정보통신업)36 (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)27 (건설업)17 (음식점업)16 등(단,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·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) ※ (주요 제외 업종)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 등
-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	- 백년소상공인 → 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
<신 설>	○ (심사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* 심사 * ①'가업' 해당 여부,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,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, ④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
○ (부모)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	○ 10년 이상 → 20년 이상
○ (수증자)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	○ (좌 동)

○ (**특례대상 토지**)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(건축물 바닥면적의 **3~7배***를 초과하는 토지)는 제외 * (상업지역) 3배, (공업지역) 4배, (도시지역 外) 7배 등	○ **3~7배** → **2~3배*** * (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) 2배, (그 외) 3배
<신 설>	- (**한도**) 특례대상 토지 **1㎡ 당 1,000만원**
○ (**업종변경**) **대분류 내**에서 업종 변경 시 특례 허용	○ (**업종변경**) **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**를 거쳐 **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** 특례 허용(대분류 외도 가능) * 경제환경,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,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사
<신 설> ※ (겸업) 주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,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특례 허용	○ (**겸업**) **주업종**(특례업종)-**부업종**(비특례업종)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**안분**하여 **주업종 해당 부분**만 **특례** 적용 ※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
○ (**특례한도**) 10년, 20년, 30년 이상 각각 300억원, 400억원, 600억원	○ (**특례한도**) **부모의 경영연수 × 20억원**
<신 설>	- **한도: 1,000억원**
○ (**사후관리**) **5년**	○ 5년 → **10년**
- 수증자가 **대분류가 다른 업종**으로 **변경**하는 경우 **추징** * (예외)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	- 수증자가 **다른 업종**으로 **변경**하는 경우 **추징** * (예외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7.1.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

(4)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(조특법 §30의7, 조특령 §27의7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, 한도, 적용방식** *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·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(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)	□ **가업상속공제 개편**에 맞춰 조정
<신 설>	○ **(정의) 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***를 보유한 기업 * 특허권, 영업비밀, 산업기술,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·노하우
○ **대분류** 기준 16개 +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* * 엔지니어링사업, 물류산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	○ **세세분류** 기준 **727개** * (제조업)479 (도소매업)86 (정보통신업)36 (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)27 (건설업)17 (음식점업)16 등(단,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·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) ※ (주요 제외 업종)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 등
- **백년소상공인**으로 지정된 경우 **업종 요건 충족** 간주	- 백년소상공인 → **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**
<신 설>	○ **(심사)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*** 심사 * ①'가업' 해당 여부,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,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, ④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
○ **(부모) 10년 이상** 계속 경영 등	○ 10년 이상 → **20년** 이상
○ **(수증자)**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	○ (좌 동)

○ (**유예대상 토지**)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(건축물 바닥면적의 **3~7배***를 초과하는 토지)는 제외 * (상업지역) 3배, (공업지역) 4배, (도시지역 外) 7배 등	○ **3~7배 → 2~3배*** * (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) 2배, (그 외) 3배
<신 설>	- (**한도**) 유예대상 토지 **1㎡ 당 1,000만원**
○ (**업종변경**) **대분류 내**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	○ (**업종변경**) **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**를 거쳐 **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** 유예 허용(대분류 외도 가능) * 경제환경,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,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
<신 설> ※ (겸업)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,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	○ (**겸업**) **주업종**(유예업종)-**부업종**(비유예업종)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**안분**하여 **주업종 해당 부분**만 **납부유예** 적용 ※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
○ (**사후관리**) **5년**	○ 5년 → **10년**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7.1.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

(5)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

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(조특법 §30의8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피승계기업의 **주식·출자지분**(주식등) 또는 **사업용 자산 양도** 시 **양도소득세 감면** ○ (요건) **매도자**가 **매수자**에게 사업승계* 위해 **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*** * 사업승계의 유형,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- (**피승계기업**) ❶·❷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❶ **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**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❷ **중소기업** 또는 **중견기업**(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) - (**매도자**) 피승계기업을 **20년 이상 계속 경영 + 60세 이상**인 **최대주주** 또는 **최대출자자** - (**매수자**) ❶ 또는 ❷ ❶ 피승계기업과 **동일한 업종***을 **주된 사업**으로 하는 **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**한 개인·기업 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❷ **피승계기업**에서 **5년 이상** 계속하여 근무한 **임·직원** ○ (**특례**) **양도소득세 세액감면** - (**대상**) 법인**주식등***, 개인사업자**사업용 자산*** *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「소득세법」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- (**세율**) **20%** 세액감면 - (**한도***) 매도자의 **경영연수** × **연 5천만원** *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○ (**사후관리**) 양도한 자산을 **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**하는 경우 **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** ○ (**신청방법**) **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** 시 감면 신청 ○ (**적용기간**) **'28.1.1. ~ '30.12.31.**

<개정이유>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신설(조특법 §30의8·§13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승계기업**에 대한 **소득세·법인세 감면** ○ (**요건**) **매수자**가 **매도자**로부터 **사업승계*** * 사업승계의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※ 매도자,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 ○ (**특례**) **승계받은 사업장**에 대해 **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** 또는 **법인세 10% 감면***(한도: 연간 5억원) *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(조특법 §132) ※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○ (**사후관리**) 정당한 사유*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❶~❺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감면세액** 및 **이자상당액 추징** *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❶ 매수자의 **주식·출자지분 감소** ❷ **승계받은 사업용 자산**의 **40% 이상 처분** ❸ 승계받은 사업장의 **정규직 근로자 수**와 **총급여액 10% 이상 감소** ❹ 승계받은 사업장을 **1년 이상 휴업·폐업** ❺ **승계받은 사업**을 매도자가 **다시 사업승계** ○ (**신청방법**) **소득세·법인세 과세표준신고** 시 감면 신청 ○ (**적용기간**) '28.1.1. ~ '30.12.31.

<개정이유>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③ 세액감면·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(조특법 §127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소득세·법인세 세액감면**과 **세액공제** 간 **중복적용 배제**	□ **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**
ㅇ **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** 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	ㅇ (좌 동)
<추 가>	- 사업승계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ㅇ **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** - 통합투자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	ㅇ (좌 동)
□ **소득세·법인세 세액감면** 간 **중복적용 배제**	□ **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** 및 **중복적용 예외 규정 신설**
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	ㅇ 사업승계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 추가
<단서 신설>	- 단, **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**과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은 **중복 허용**

<개정이유> 조세지원 중복 방지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(조특법 §128)

현 행	개 정 안
□ 조세감면 배제	□ 감면 배제 대상 추가
○ 소득세·법인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	○ (좌 동)
<추 가>	- 사업승계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○ 소득세·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·오류 등이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	○ (좌 동)
<추 가>	- 사업승계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○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의무*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* 사업용계좌 신고,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	○ (좌 동)
<추 가>	- 사업승계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
<개정이유> 조세감면 배제 대상 합리화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령 §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농어촌특별세*** **비과세** 대상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·법인세 감면세액의 20%	□ **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**
ㅇ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·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세액감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사업승계 시 **주식·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** ㅇ 사업승계 시 **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
<개정이유>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’28.1.1.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3 비과세 · 감면 정비

【적용기한 종료】

(1)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09①~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○ (감면한도) 대당 70만원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2)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34의2·§39)

현 행	개 정 안
□ 재무구조개선계획*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*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,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,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,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❶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- 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❷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 시 - (주주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3)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(조특법 §99의13)

현 행	개 정 안
□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○ (대상) 내국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*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*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,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조치 ○ (특례)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

(4)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30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고용유지 세액공제 ○ (대상) 중소기업, 위기지역* 중견기업 *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○ (요건) 근로시간 단축*을 통해 고용 유지 *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○ (공제금액) ❶+❷ ❶ 임금감소액* × 10% * (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-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) ×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❷ 임금보전액** × 15% ** (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-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× 1.05) ×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※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% 소득공제(1,000만원 한도)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5)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(조특법 §104의21, 조특령 §104의19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○ (대상)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부칙 제7조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○ (특례) -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이연 ▪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제배당 상당액을 합병신주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▪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* 일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신주 중 처분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금액 -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배제 - 토지주택공사의 토공·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

(6)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(조특법 §20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공공차관협약***에 따른 **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** *「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 ○ (**대주에 대한 특례**)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 차관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(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, 원천징수세액 등) 감면 ○ (**기술·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**) 차관 자금에 기반한 인프라 사업 등에 기술·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득·법인세 감면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7) 농·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16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농·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** ○ (**대상**) - 농·수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이 해당 조합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- 농·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-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·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-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,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-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8)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
(관세법 §90①, 관세칙§37③·④·§38②·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	□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적용 종료
○ 정부, 지자체, 학교,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물품 ○ 학교, 공공의료기관 등 기증물품	○ (좌 동)
○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	<삭 제>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적용시기> '27.8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신·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1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·재생에너지의 생산용·이용 기자재 등 관세 감면 ○ (대상물품) 국내 제작 곤란한 신·재생에너지의 생산용·이용 기자재 등 ○ (대상기업) 중소·중견기업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0)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46의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** 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% 이상 매각 - 벤처기업 등*에 매각대금의 50%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* 벤처투자조합, 벤처기업투자신탁, 벤처기업 등 -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재투자 ○ (**특례**)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**까지 **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**	□ **적용기한 종료**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1)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(조특법 §29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근로소득 증대세제	□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
○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 ○ (요건) ❶+❷ 또는 ❷+❸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>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* *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≥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○ (공제율)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%(중견 10%)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○ '28.12.31.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2)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(조특법 §46의7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
○ (대상) 비상장 벤처기업 등* 주주 * 벤처기업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중이 5% 이상인 중소기업, 기술우수중소기업 ○ (특례)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7.12.31.	○ '27.12.31.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3)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(조특법 §15)

현 행	개 정 안
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	□ 적용 종료
○ (대상) 벤처기업 출자자	
○ (면제내용) 벤처기업의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	
○ (면제한도) 1인당 2억원	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까지 납세의무 성립분	○ '26.12.31.까지 납세의무 성립분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4)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(조특법 §99의1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** 납입시 **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	□ **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**
ㅇ (**대상**) 기초연금 수급자	ㅇ (좌 동)
ㅇ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	
-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	
-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	
-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	
ㅇ (**특례**) 연금계좌납입액(1억원 한도)의 10%를 세액공제	
ㅇ (**사후관리**) 연금계좌 납입일부터 5년내에 연금외수령시 공제액 전액 추징	
ㅇ (**적용기한**) **'27.12.31.**	ㅇ **'27.12.31. 종료**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5)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21의35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○ (요건)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○ (특례)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9% 분리과세 (납입한도 3억원) 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6)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 (조특법 §10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○ (환급대상) 외국인 관광객 ○ (대상용역)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	□ 적용기한 단축 ○ (좌 동) ○ ’27.6.30.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7) 소액·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(부가법 §26·§27, 부가령 §39)

현 행	개 정 안
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ㅇ 미가공식료품, 수돗물, 도서, 의료보건용역 등 ㅇ **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** * 소액 :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특수용 : 담배사업법 §19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	□ 소액·특수용 담배 면세 제외 ㅇ (좌 동) <삭 제>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18)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(조특법 §75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부장려금 특례 ㅇ 기부장려금 단체*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 *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·사후관리·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단체 중 재경부 장관이 지정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

(19) 농·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

(조특법 §121의23⑩·§121의25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○ (대상) -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-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·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【재정전환】

(1) 출산·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(소득법 §59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출산·입양 세액공제 ○ (대상) 출산·입양 신고한 거주자 (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 등) ○ (공제금액)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	□ 적용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

(2)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92)

현 행	개 정 안
□ 혼인세액공제 ○ (대상) '26.12.31.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○ (적용연도)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 ○ (공제금액) 적용대상 1인당 50만원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

(3)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○ (대상)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4)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·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 (조특법 §104의22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업의 운동경기부·이스포츠경기부 설치 과세특례 ○ (특례) -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% 세액공제 (장애인 운동경기부: 5년간 20%) -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% 세액공제 ※ (운영비용) 선수·감독·코치 등 인건비, 대회참가비, 훈련장비구입비 등 ○ (사후관리) 설치 후 3년 내(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)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	□ 적용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

(5)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11의5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감면 ○ (감면액) 56원/ℓ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6)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06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* 면제 *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세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7)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06①·§111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 면제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8) 전기차·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(조특법 §109④~⑨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기차·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	□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(재정지출 전환)
○ (감면한도)	○ 단계적 축소
- 전기차: 대당 300만원	- ('27) 200만원 → ('28) 100만원
- 수소전기차: 대당 400만원	- ('27) 300만원 → ('28) 150만원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8.12.31.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기·수소를 이용하는 시내·농어촌·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□ 적용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○ '26.12.31.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0)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(조특법 §126의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

○ (공제율) 결제수단·대상별 차등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❶ 신용카드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❷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❸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<td>40%</td></tr>
<tr><td>❹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 관람료·체육시설이용료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- ❹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

○ (공제한도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총급여 / 공제한도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초과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300만원</td><td>250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녀 1명</td><td>350만원</td><td>275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녀 2명 이상</td><td>4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가 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3">3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
<tr><td>대중교통</td><td rowspan="2">-</td></tr>
<tr><td>도서공연등</td></tr>
</table>
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</td><td>□ 추가공제 합리화 등

○ (좌 동)

○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(재정지출 전환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❶ 신용카드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❷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❸ 전통시장</td><td>40%</td></tr>
<tr><td>❹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 관람료·체육시설이용료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<삭 제>

○ 추가공제 한도 조정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총급여 / 공제한도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초과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300만원</td><td>250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녀 1명</td><td>350만원</td><td>275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녀 2명 이상</td><td>4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추가 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2">200만원</td><td rowspan="2">100만원</td></tr>
<tr><td>도서공연등</td></tr>
</table>
○ (좌 동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(11)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(조특법 §87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	□ 적용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○ (대상) 무주택세대주*인 청년 및 배우자 * 소득요건: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	
○ (특례) 이자소득(500만원 한도) 비과세	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까지 가입분	○ '26.12.31.까지 가입분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2)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(조특법 §8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	□ 적용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○ (대상) 농어민	
○ (특례) 이자소득 비과세	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까지 가입분	○ '26.12.31.까지 가입분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3)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목재펠릿*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제** * 목재 부산물 등을 고온 압축하여 만든 바이오 연료 ○ (**대상**)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·임업용 목재펠릿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□ **적용기한 종료**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4)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0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가 등에 공급하는 **도시철도 건설용역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** ○ (**대상**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도시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, 한국철도공사 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□ **적용기한 종료**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경과조치> (신규건설) '26.12.31. 이전 실시협약 체결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
(개량·증설) '27.12.31.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

(15) 이스포츠(E-Sports)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04의35)

현 행	개 정 안
□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○ (대상)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○ (특례)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 (재정지출 전환)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6)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06의7)

현 행	개 정 안
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	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특례)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% 경감 및 활용	○ 99% → 94%
- 90%: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- 4%: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	○ (좌 동)
- 5%: 택시 감차 보상재원	<삭 제> (재정지출 전환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【재설계】

(1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(소득법 §52⑤, 소득령 §11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
○ (대상)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

<추 가>

○ (공제한도) 600~2,000만원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상환기간 15년 이상</th><th>상환기간 10년 이상</th></tr>
<tr><td>고정금리
+
비거치식</td><td>고정금리
또는
비거치식</td><td>기타</td><td>고정금리
또는
비거치식</td></tr>
<tr><td>2,000만원</td><td>1,800만원</td><td>800만원</td><td>600만원</td></tr>
</table>
○ (주택요건) 기준시가 6억원 이하</td><td>□ 적용대상 합리화

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좌 동)
-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주하는 자
(과세기간 종료일 기준)
※ 다만, 취학,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요건 미적용

○ (좌 동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'27년~'29년 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

(2)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

(소득법 §59의4③, 소득령 §118의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교육비 세액공제**	□ **공제대상 합리화**
○ (**공제율**)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	○ (좌 동)
○ (**공제대상**)	
- (**본인**) 대학(원) 학비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	
- (**초중고·대학생**) 수업료, 교재비, 입학금, **일반대학**의 대학입학 전형료, 수능응시료, **예능학원**·체육시설 **교육비*** 등 *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	- **특별법에 따른 대학**의 입학전형료 **추가**
- (**취학전 아동**) 유치원·어린이집 수업료, **학원비,** 체육시설 교육비 등	- **학원비 → 예능학원*** **교육비** * 예능(음악·미술·무용)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(부가법 §46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**한시적 우대**	□ **우대공제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**
ㅇ 기본공제 - 공제율 : 1.0% - 공제한도 : 연 500만원	ㅇ (좌 동)
ㅇ **한시적 우대공제**	ㅇ (좌 동)
- **공제율 : 1.3%**	- **1.3% → 1.2%**
- **공제한도 : 연 1,000만원**	- **연 1,000만원 → 500만원**
- **적용기한 : '26.12.31.**	-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(조특법 §18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세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특례) 19% 단일세율* 적용 * 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	○ 19% → 21%
- 비과세·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	- (좌 동)
○ (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5)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(조특법 §29의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** 수령액에 대한 **소득세 감면**	□ **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**
ㅇ (**대상**)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**중소·중견기업** 근로자	ㅇ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**중소기업** 근로자
ㅇ (**감면율**) ❶ 중소기업 - 청년 : 90% - 그 외 : 50%	ㅇ (좌 동)
❷ **중견기업** - **청년 : 50%** - **그 외 : 30%**	**<삭 제>**
ㅇ (**감면대상소득**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	ㅇ (좌 동)
ㅇ (**적용기한**) '27.12.31.	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

(6) 신성장원천기술·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·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

(조특법 §24①, 조특령 별표7·7의2, 조특칙 별표6·6의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R&D 비용 세액공제

○ (적용기한)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적용기한</th></tr><tr><td>신성장원천기술</td><td rowspan="2">'29.12.31.</td></tr><tr><td>국가전략기술</td></tr><tr><td>↳ 반도체</td><td>'31.12.31.</td></tr></table>
<신 설></td><td>□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도입

○ (좌 동)

○ (세부기술별 적용기한)
선정연도에 따라 차등
<table><tr><th rowspan="2">세부기술
선정연도</th><th colspan="2">적용기한</th></tr><tr><th>반도체</th><th>반도체外</th></tr><tr><td>'17년 이전</td><td colspan="2">'27.12.31.</td></tr><tr><td>'18~'20년</td><td colspan="2">'28.12.31.</td></tr><tr><td>'21년</td><td>'29.12.31.</td><td rowspan="3">'29.12.31.</td></tr><tr><td>'22년</td><td>'30.12.31.</td></tr><tr><td>'23년 이후</td><td>'31.12.31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□ 통합투자세액공제

○ (적용기한)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적용기한</th></tr><tr><td>신성장사업화시설 등</td><td>-</td></tr><tr><td>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</td><td rowspan="2">'29.12.31.</td></tr><tr><td>↳ 반도체</td></tr></table>
<신 설></td><td>□ 적용기한 추가 및
세부시설별 적용기한 도입

○ 신성장사업화시설 등
적용기한('29.12.31.) 추가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적용기한</th></tr><tr><td>신성장사업화시설 등</td><td>'29.12.31.</td></tr><tr><td>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</td><td rowspan="2">'29.12.31.</td></tr><tr><td>↳ 반도체</td></tr></table>
○ (세부시설별 적용기한)
선정연도에 따라 차등
<table><tr><th>세부시설
선정연도</th><th>적용기한</th></tr><tr><td>'17년 이전</td><td>'27.12.31.</td></tr><tr><td>'18~'20년</td><td>'28.12.31.</td></tr><tr><td>'21년 이후</td><td>'29.12.31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원천기술 관리 효율화

(7)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(조특법 §96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

○ (대상)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* 임대소득

* 85m²·6억원 이하, 임대료등 증가율 5% 이내, 아파트 제외

○ (특례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(%)</th><th colspan="2">임대 호수</th></tr>
<tr><th>1호</th><th>2호 이상</th></tr>
<tr><td>공공지원·장기일반 민간임대</td><td>75</td><td>50</td></tr>
<tr><td>그 외</td><td>30</td><td>20</td></tr>
</table>

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</td><td>□ 감면율 축소

○ (좌 동)

○ 호수별 차등 폐지

<table>
<tr><th>구 분(%)</th><th>1호 이상 임대 시</th></tr>
<tr><td>공공지원·장기일반 민간임대</td><td>50</td></tr>
<tr><td>그 외</td><td>20</td></tr>
</table>

○ (좌 동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8)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(조특법 §29의8①·⑤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
□ 통합고용세액공제

○ (지원대상별 공제액)

공제액 (1인당, 만원)		대	중견	중소	
				수도권	지방
일반	1년차		300	400	700
	2년차		500	900	1,200
	3년차		500	1,000	1,300
우대*	1년차	300	500	700	1,000
	2년차	500	900	1,600	1,900
	3년차	-	900	1,700	2,000

* 청년(15~34세)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근로자 등

- (적용기한) ‘28.12.31.

○ (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)

-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
-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
  - ▪ 육아휴직자가 복직
  - ▪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
- (공제액)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,300만원, 중견기업 900만원
- (적용기한) ‘26.12.31.

</td><td>

□ 적용대상 합리화 등

○ 대기업 제외

공제액 (1인당, 만원)		대	중견	중소	
				수도권	지방
일반	1년차		300	400	700
	2년차		500	900	1,200
	3년차		500	1,000	1,300
우대*	1년차		500	700	1,000
	2년차		900	1,600	1,900
	3년차		900	1,700	2,000

* (좌 동)

- (좌 동)

○ 적용기한 종료*

* ‘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(노동부)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
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

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(조특법 §18, 조특령 §16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*	□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
* 10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적용	
○ (대상) ❶~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	○ (좌 동)
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(30만$ 이상)에 따른 기술 제공자	
❷「첨단산업인재혁신법」상 우수 해외인재	
❸ (ⅰ) ~ (ⅳ) 요건을 모두 충족	
(ⅰ) 학교,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	
(ⅱ)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*가 없을 것	
*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§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	
(ⅲ) 자연·이공·의학계 **학사** 이상	(ⅲ) **학사 → 박사**
(ⅳ) 국외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	(ⅳ) (좌 동)
- 다만,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	<삭 제>
○ (적용기한) **'26.12.31.**	○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4.1.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(조특령 §16의3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**연구기관***	□ **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**
*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시 10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적용	
ㅇ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방과학연구소 등	ㅇ (좌 동)
ㅇ 기업 내부에 설치한 **기업부설연구소** 또는 **연구개발전담부서**	ㅇ 해당 기업이 다음 **어느 하나에 해당**하는 경우로 한정
<신 설>	- **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**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-「국가전략기술육성법」에 따라 **국가전략기술** 보유 -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에 따른 **전략기술** 보유 -「산업기술보호법」에 따른 **국가핵심기술** 보유

<개정이유>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‘27.4.1.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87의7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	□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펀드)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(리츠) <단서 신설>	○ (좌 동) - 단,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·리츠는 제외* *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
○ (특례) 배당소득 9% 분리과세 - 단,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	○ (좌 동) <삭 제>
○ (적용방법) 납세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신청	○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개설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- 투자일로부터 3년간 보유	○ (좌 동) -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<삭 제>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까지 투자분	○ '29.12.31.까지 발생하는 소득분

<개정이유> 제도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<특례규정> '26.12.31. 이전 투자분의 경우 ①종전 규정 적용과 ②개정 규정 적용(전용계좌 가입 필요, 전용계좌 가입 시 3년 의무보유 규정 미적용) 중 선택 가능

(11)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(조특법 §117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○ (요건)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(12)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(조특법 §116)

현 행	개 정 안
□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	□ 면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창업중소기업*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, 통장, 계약서 등 * 창업일부터 2년 이내	○ (좌 동)
○ (특례) 인지세 면제	○ 중소기업(면제), 금융기관(50% 감면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

(13)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
(조특법 §104의8⑤·⑥, 조특령 §104의5⑦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자고지 세액공제 ○ (대상) 전자고지 신청자 ○ (세목) 중간예납 소득세, 예정고지·부과 부가가치세 등 ○ (특례)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- 미신고·과소신고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외	□ 적용 종료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

(14)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○ (대상) 논·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<단서 신설>	□ 불법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○ (좌 동) -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

<개정이유> 농지의 적법한 이용 유도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15)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(조특법 §70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경영회생 지원사업* 대상 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과세특례 * 경영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 장기임대·환매권 보장 ○ (대상) 농어촌공사에 농지등*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·축산에 사용한 후 환매한 농업인 *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농업인이 직접 경작·축산에 사용한 농지·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- 양도 후 임차·직접 경작 - 임차기간(7~10년) 내 환매 ○ (특례) 해당 농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	□ 특례 적용기한 설정 ○ (좌 동)
<신 설>	○ (적용기한) ’29.12.31.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성과평가 강화

(16)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·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 (조특법 §85의7·§85의9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·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대상 합리화 및 상시화
○ (대상) 내국인(거주자+내국법인)	○ 내국법인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❶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·사용 중인 공장* 또는 물류시설** *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**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❷ '사업시행지역 밖 +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'으로 이전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- 행정중심복합도시 - 부산(기장군 제외)·대구(달성군·군위군 제외)·전남광주통합특별시(시·군 제외)·대전·울산* * 단, 산업단지는 제외 ○ (특례)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- (공장)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- (물류시설)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·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

(17)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·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 (조특법 §8의3②·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	□ 적용기한 정비
○ (세액공제율) ❶ 대·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*: 10% * 신보·기보 출연금, 대·중소·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,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❷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: 장부가액의 3% ❸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투자: 투자금액의 1/3/7%(대/중견/중소기업) ❹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: 해당 자산 시가의 10% ❺ 무역보험기금 출연금: 협력 중소기업 지원 10%, 협력 중견기업 지원 5%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’28.12.31.	○ 일부 적용 종료 - ❷·❸: ‘26.12.31. - ❶·❹·❺: ’28.12.31.

<개정이유> 조세지출 효율화

<경과조치> ’26.12.31.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

【상시화】

(1)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(조특법 §104의31)

현 행	개 정 안
□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에 대한 소득공제	□ 상시화
○ (대상)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* *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: ❶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·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❷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·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❸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○ (요건)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 ○ (제외)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·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이중과세 조정 지속 지원

(2)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(조특법 §104의12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	□ 상시화
○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-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-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익금산입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서민금융 지속 지원

(3)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(조특법 §140①·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물품 한시적 과세특례	□ 상시화
○ (대상) 해저광물 탐사·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·장비·자재	○ (좌 동)
○ (특례) 관세·부가가치세 면제	
○ (적용기한) '28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속 지원

(4)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(조특법 §10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	□ 상시화
○ (대상)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	○ (좌 동)
○ (특례)	
-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	
-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	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연구개발 지속 지원

(5)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(조특법 §121의25⑦)

현 행	개 정 안
□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□ 상시화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

【적용기한 연장】

(1)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34·§40·§4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재무구조개선계획***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*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,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,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,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	□ **적용기한 연장**
ㅇ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-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 시 - (**주주**)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▪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- (**해당법인**)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- (**금융기관**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- (**해당법인**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	ㅇ (좌 동)
ㅇ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ㅇ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기업 구조조정 지원

(2)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·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17·§121의27~§121의31)

현 행	개 정 안
□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승인받은 **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**	□ **적용기한 연장**
ㅇ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 시 - (**주주**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 - (**해당법인**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 시 - (**주주**)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▪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- (**해당법인**)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- (**금융기관**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- (**해당법인**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-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ㅇ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-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	ㅇ (좌 동)
ㅇ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ㅇ **'29.12.31.**
□ **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**	□ **적용기한 연장**
ㅇ (**요건**) 사업재편계획 대상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	ㅇ (좌 동)
ㅇ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ㅇ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기업 구조조정 지원

(3) 금융기관의 자산·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52)

현 행	개 정 안
□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*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특례 *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특례) 순부채액*을 손금산입 * 이전받은 부채가액 – 이전받은 자산가액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9.12.31.

<개정이유>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

(4) 기술이전·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술 이전·대여 소득 세액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 ○ (특례)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의 50%, 대여 소득의 25% 세액감면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7.12.31.

<개정이유>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

(5)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38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지주회사 설립·전환**을 위한 **주식 현물출자**에 대한 **과세특례**	□ **적용기한 연장**
○ **과세이연** - (**특례**)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	○ (좌 동)
-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- **'28.12.31.**
○ **분할납부** - (**특례**)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	○ (좌 동)
- (**적용기간**) **'27.1.1.~'29.12.31.**	- **'29.1.1.~'31.12.31.**

<개정이유> 지주회사 설립·전환 지원

(6)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62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공기관이 **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***하는 경우 과세특례 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	□ **적용기한 연장**
○ (**특례**)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**'26.12.31.**	○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지역 균형발전 지원

(7)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98의9)

현 행	개 정 안
□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특례* *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- 비수도권 소재 - 전용면적 85㎡, 취득가액 7억원 이하	○ (좌 동)
- '24.1.10. ~ '26.12.31.에 취득	- '24.1.10. ~ '27.12.31.에 취득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

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(법인령 §92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CR리츠*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*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: 총자산의 70% 이상을 기업의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자산관리회사에 투자·운용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-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	○ (좌 동)
- '25.1.1. ~ '26.12.31.에 취득	- '25.1.1. ~ '27.12.31.에 취득
-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	- (좌 동)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

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(종부령 §4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특례) CR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	○ (좌 동)
○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	
-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	
- '24.3.28. ~ '26.12.31.에 취득	- '24.3.28. ~ '27.12.31.에 취득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

(8)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77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2년 이상 보유(사업인정고시일 기준) -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○ (감면율) 현금보상 15%, 채권보상 20%* * 채권 만기 3년 이상 35%, 5년 이상 45%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8.12.31.

<개정이유>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

(9)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7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-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-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○ (특례) 양도소득세 40% 감면 또는 과세이연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○ '28.12.31.

<개정이유>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

(10)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17)

① 우정사업본부·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현 행	개 정 안
□ 차익거래* 목적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*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식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	○ (좌 동)
○ (요건) 코스피·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 * 연기금은 코스닥 주식에 한정	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○ ’29.12.31.

<개정이유> 우정사업본부·연기금 차익거래 지원

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현 행	개 정 안
□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요건)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○ ’29.12.31.

<개정이유>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

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·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현 행	개 정 안
□ 금융지주회사 설립·전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요건)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·교환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○ ’28.12.31.

<개정이유> 금융지주회사 설립·전환 지원

(11)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04의32)

현 행	개 정 안
□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○ (특례) 제출인원 1명당 500원 공제 ○ (공제한도) 연간 200만원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○ ’29.12.31.

<개정이유> 납세협력비용 완화

(12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4의15)

현 행	개 정 안
□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○ (대상) 다음의 투자·출자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❶ 광업권·조광권 취득 ❷ 광업권·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(광업권·조광권 소유)에 대한 출자* *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이거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*에 대한 증자·자금대여 * 내국인이 100%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❶·❷의 방법으로 광업권·조광권 취득한 경우 ○ (특례) 투자·출자금액의 3%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	□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’26.12.31.	○ ’29.12.31.

<개정이유> 해외자원개발 지원

(13)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26의7⑨)

현 행	개 정 안
□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○ (적용기한) ‘26.12.31.	□ 적용기한 연장 ○ ‘29.12.31.

<개정이유> 금 거래 양성화 지원

Ⅳ.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

1 세제 합리화

(1)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(상증법 §63⑤, 상증령 §52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최대주주**가 보유한 **상장주식 평가방법**	□ **'주가 누르기 기업'**에 대한 **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**
ㅇ (**원칙**) 시가 - **평가기준일 전·후 각 2개월간***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* 현행 평가기간	ㅇ (좌 동)
<신 설>	ㅇ (**예외**) **주가 누르기** 해당시 **새로운 주식 평가방법** 적용 - (**추정요건**) ❶ 또는 ❷ 해당 시 '**주가 누르기**' **추정** ❶ (저PBR) 최근 **13반기 중 12반기**의 **PBR***이 **업종별**** **하위 25%**(코스피), **10%**(코스닥)에 해당 * 시가총액 / 회계상 순자산가치 ** GICS(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)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 ❷ (저PBR 외) **행위 요건**(ⅰ) + **주가 하락 요건**(ⅱ) (ⅰ)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**1년간** 중복상장,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**주가**에 **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는 **행위** 존재

	(ii) **시가평가액**(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)이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**6개월간, 1년간, 2년간** 또는 **3년간 평균액** 중 **가장 큰 가액**에 비해 **30% 이상 낮음*** * 현행 시가평가액 ≤ Max{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, 1년간, 2년간, 3년간 각각의 평균액} × 0.7 - (심의) **평가심의위원회**에서 **주가 누르기 심의·확정** * 납세자는 시가(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)대로 신고 → ①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 입증: 현행 평가방법 유지 ②납세자가 미입증: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- (**주식 평가방법**) ❶ 또는 ❷ ❶ (❶ **요건 해당 시**) **Max**{(**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**) × 1.3,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**6개월간, 1년간, 2년간, 3년간, 4년간, 5년간, 6년간, 6년 6개월간** 각각의 평균액} ❷ (❷ **요건 해당 시**) **Max**{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**6개월간, 1년간, 2년간, 3년간** 각각의 평균액}

<개정이유>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·증여세 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7.4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

(2)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(상증법 §35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	□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 범위 확대
○ (대상)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,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외 -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- 장내 정규시간 매매된 상장주식 -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상장주식	○ (좌 동)
<단서 신설>	▪ 다만, 최대주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
○ (요건)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대가·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* 이상 * Min{시가의 30%, 3억원} ○ (증여재산가액) |대가-시가| - 기준금액 ○ (예외)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-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시 이익의 증여 미해당 - 다만, 다음의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▪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	○ (좌 동)
<추 가>	▪ 최대주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

※「법인세법」,「소득세법」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현행과 동일

<개정이유>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·증여세 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7.4.1.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3)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(조특법 §126의7)

현 행	개 정 안
□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*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*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.99% 이상인 금	□ 한국은행 인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
○ 거래* 시 면세, 보관기관에서 인출 시 과세 * 보관기관에 금지금 임치 필요	○ (좌 동)
<단서 추가>	- 단,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

<개정이유>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

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(소득법 §17·§94, 소득령 §27, 법인법 §16, 법인령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법인·개인주주등의 의제배당 범위	□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
○ 주식소각·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	○ 자기주식등*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* 자기주식, 자기출자지분
○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등	○ (좌 동)
<추 가>	○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*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 * 거래소,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 (단, 시간외 대량매매, 대량·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포함)

<개정이유>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

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·손실 익금·손금 불산입(법인법 §17·§20)

현 행	개 정 안
□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	□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
ㅇ 주식발행액면초과금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차익 ㅇ 감자차익 ㅇ 합병·분할차익	ㅇ (좌 동)
<추 가>	ㅇ 자기주식등 처분이익
□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	□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
ㅇ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ㅇ 주식할인발행차금	ㅇ (좌 동)
<추 가>	ㅇ 자기주식등 처분손실

〈개정이유〉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’27.1.1.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

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-주주간 이중과세 조정 (소득법 §17③, 법인령 §17의2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배당소득가산**(Gross-up)이 **적용 제외**되는 **배당**	□ **적용제외 대상 추가**
ㅇ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(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)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법인의 **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**에 따른 **의제배당**
□ **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**이 **적용 제외**되는 배당금으로서 **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의 범위**	□ **적용제외 대상 추가**
ㅇ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(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)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법인의 **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**에 따른 **의제배당**

<개정이유>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

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·증여예시 유형 정비 (법인령 §88①, 상증법 §39·§39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❶ 불공정 합병,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❷ ❶외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 분여	□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ㅇ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, 처분 포함
□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ㅇ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	□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ㅇ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, 처분 포함

<개정이유>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

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(소득령 §46, 법인령 §13)

현 행	개 정 안
□ 의제배당의 귀속시기	□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 규정
ㅇ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: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 등을 결의한 날	ㅇ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 제외
<추 가>	ㅇ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: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

<개정이유>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

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(조특령 §35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○ (원칙)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시 과세이연*된 금액을 추징 * 지주회사 주식 시가 – 현물출자주식 장부가액(현물출자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) ○ (예외) -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*를 설립하는 경우 : 순수지주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*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 <신 설>	□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○ (좌 동) - **적격합병**(지주회사+ 현물출자한 법인)**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 :** **최초 현물출자한 주식**(자회사 주식)**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** < 이전하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산식 > $\text{압축기장충당금 잔액} \times \frac{\text{자기주식 소각 시 잔존 자회사 주식수}}{\text{최초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수}}$ ※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 금액(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)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

<개정이유> 구조조정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등 소각 분부터 적용

(5)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(주세법 §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○ (대상)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(생맥주) ○ (경감세율) 1㎘당 708,500원(20% 경감) * 경감 전 세율: 1㎘ 당 885,700원 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<개정이유> 세제지원 목적 달성

(6) 특정외국법인(CFC) 판정기준 합리화(국조법 §27)

현 행	개 정 안
□ 특정외국법인("CFC")*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* CFC(Controlled Foreign Company)	□ 실효세율 판정기준 완화
ㅇ (개요)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	ㅇ (좌 동)
ㅇ (요건) ❶~❹ 모두 충족	
❶ (실효세율(A) 기준) : A ≤ 법인세최고세율(25%)×70% = 17.5% * A = 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/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	❶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 : A 〈 15%
❷ (지배)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* *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직·간접 보유 등 ❸ (소유)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% 이상 직·간접 소유 ❹ (사업활동) 고정 시설과 인력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	ㅇ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CFC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7) 적격소재국추가세(QDMTT)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(법인령 §94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	□ 적격소재국추가세액* 포함 *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-up Tax: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(15%)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,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 국가가 추가로 과세
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ㅇ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	ㅇ (좌 동)
<추 가>	ㅇ **적격소재국추가세액**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

(1) 포상금 제도 개편

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
(국기법 §84의2①, 국기령 §65의4①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포상금 지급한도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급한도</th></tr>
<tr><td>탈세제보(1호)</td><td>40억원</td></tr>
<tr><td>체납자 은닉재산 신고(2호)</td><td>30억원</td></tr>
<tr><td>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(3호~7호)</td><td>20억원</td></tr>
</table>
□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
<table>
<tr><th>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
<tr><td>5천만원 이상 ~ 5억원 이하분</td><td>2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 ~ 20억원 이하분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2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분</td><td>10%</td></tr>
<tr><td>30억원 초과분~</td><td>5%</td></tr>
</table></td><td>□ 지급한도 폐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급한도</th></tr>
<tr><td>탈세제보(1호)</td><td rowspan="3">없음</td></tr>
<tr><td>체납자 은닉재산 신고(2호)</td></tr>
<tr><td>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(3호~7호)</td></tr>
</table>
□ 지급기준 개편
<table>
<tr><th>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
<tr><td>3천만원 이상 ~ 5억원 이하분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 ~ 20억원 이하분</td><td>20%</td></tr>
<tr><td>20억원 초과분 ~</td><td>10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삭 제>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제보·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(관세법 §324①·②, 관세령 §277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포상금 지급대상

○ 관세범을 세관·수사기관에 통보,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

○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등</td><td>□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

○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* 범죄사범 포함
*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 위임된 범죄

○ (좌 동)</td></tr>
<tr><td>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* 포상금 지급한도 및 기준
* 은닉재산 외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은 관세청 훈령에서 규정

○ (지급한도) 10억원

○ (지급기준)
<table><tr><th>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<tr><td>2천만원 ~ 5억원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5 ~ 20억원</td><td>15%</td></tr><tr><td>20 ~ 30억원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30억원 초과분~</td><td>5%</td></tr></table></td><td>□ 지급한도 폐지 및 기준 개편

<삭 제>

○ 구간별 지급률 상향, 최소지급 기준액 하향
<table><tr><th>징수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<tr><td>1천만원 ~ 5억원</td><td>30%</td></tr><tr><td>5 ~ 20억원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20억원 초과분~</td><td>10%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<삭 제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 (국기령 §65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*에 대한 신고포상금 *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,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	□ 지급한도 상향
○ (지급률) 결제 또는 발급거부·미발급 금액의 20% * 건당 최대 지급한도 25만원	○ (좌 동)
○ (지급한도) 연 100만원	○ 연 100만원 → 1,000만원

<개정이유> 탈세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2) 해외신탁 관리 강화

① 「국제조세조정법」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 (국기법 §84의2①, 국기령 §65의4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「국제조세조정법」 상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

○ (지급대상) 다음 행위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

<추 가>

○ (지급기준)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·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

<table>
<tr><th>과태료·벌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
<tr><td>2천만원 이상 ~ 2억원 이하분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2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분</td><td>1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분~</td><td>5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□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편

○ (좌 동)

-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

○ 지급률 상향

<table>
<tr><th>과태료·벌금액</th><th>지급률</th></tr>
<tr><td>2천만원 이상 ~ 2억원 이하분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2억원 초과 ~</td><td>10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삭 제>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탈세 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제보·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(국조법 §91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위반 과태료**	□ **한도 인상 등**
○ (**사유**) 해외신탁 명세 또는 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	○ (좌 동)
○ (**과태료**)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% 이하*	
*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 등에 따라 50% 범위 내에서 가중·감경 가능	
<추 가>	- **해외금융계좌** 신고의무 불이행 **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**은 부과 대상에서 **제외** (중복 부과 배제)
○ (**과태료 한도**) 1억원	○ **10억원**

<개정이유>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압류해제 요건 강화(국징법 §57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압류해제 요건**	□ **요건 강화**
ㅇ 체납액 완납 ㅇ 국세 부과 전부 취소 ㅇ 체납액 전부 징수 ㅇ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(선순위채권* 포함) 보다 적을 경우 * 국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채권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, 가등기담보권 - 단, 아래의 경우 압류 유지 ▪ 교부청구,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고려시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(선순위채권 포함)보다 큰 경우	ㅇ (좌 동)
<추 가>	▪ **국세 납부 회피** 목적*으로 **선순위채권을 유지**하는 경우 * 선순위채권 설정시기·목적, 자금흐름,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

<개정이유> 체납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

(4)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(관세법 §115의2 신설·§227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 ※ **현행 납세신고 제도** ① (대상자) 모든 납세자 ② (대상물품) 모든 수입물품 ③ (신고시점) 수입신고 시 ④ (납부기한)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	□ **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** ○ **(대상)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*** *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제외) ○ **(신청기한*)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전**까지 신청 * 유효기간 5년(5년 단위 재신청) ○ **(확인내용)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·품목분류** 등 **세액산정 적정성** ○ **(확인기한) 관세사** 등이 작성한 **확인서**를 **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**까지 제출 ○ **(특례)** - **수입물품 검사 축소·생략 등** - 확인 결과에 따라 **세액정정시 보정기간내 보정으로 간주**(가산세 감면) ○ **(미제출 과태료) 500만원 이하** ※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·부실하게 확인서 작성시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 가능

<개정이유> 관세의 성실신고·납부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 납세편의 제고

(1)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(소득령 §83②, 법인령 §41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적격증빙*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(세금)계산서 등	□ 기준금액 상향
○ (경조금) 건당 20만원 이하	○ 건당 20만원 → 30만원
○ (경조금 외) 건당 3만원 이하	○ 건당 3만원 → 5만원

<개정이유> 거래현실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2)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(국기법 §48②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무신고가산세*의 감면
* 납부해야할 세액의 20%
○ (감면율)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
<table>
<tr><th>기한 후 신고 시점</th><th>감면율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<구간 신설></td></tr>
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50%</td></tr>
<tr><td>1개월 ~ 3개월 이내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3개월 ~ 6개월 이내</td><td>20%</td></tr>
</table></td><td>□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
○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 상향
<table>
<tr><th>기한 후 신고 시점</th><th>감면율</th></tr>
<tr><td>1주일 이내</td><td>75%</td></tr>
<tr><td>1주 ~ 1개월 이내</td><td>50%</td></tr>
<tr><td>1개월 ~ 3개월 이내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3개월 ~ 6개월 이내</td><td>2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(국기법 §48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○ 과세전적부심사 결정·통지 지연시 50% 감면* * 결정·통지 지연(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일 초과분)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	□ 감면율 상향 조정 ○ 50% → 75%

<개정이유>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(4)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(부가령 §11⑪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표 사업자등록*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*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(원칙은 신탁재산별 등록)	□ 대상 확대
○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○ 무체재산권(지식재산권 포함) ○ 저작권 ○ 기술과 그 사용권	○ (좌 동)
<추 가>	○ 동산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

(5)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(국징법 §115②, 국징령 §106)

현 행	개 정 안
□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*	□ 감치 신청 제외 규정 신설
*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유치장·교도소·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○ (대상)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- 3회 이상 체납, 체납 1년 경과,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-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-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 인정 ○ (감치기간) 30일의 범위 내 ○ (신청) 검사에게 감치 신청	○ (좌 동)
<단서 신설>	-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시 감치 신청 제외

<개정이유>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인 제고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(부가령 §95)

현 행	개 정 안
□ 대리납부* 적용대상 국외 사업자 *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(면세사업자)가 납부 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○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) <단서 신설>	□ 관련성 규정 보완 ○ (좌 동) -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

<개정이유> 납세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
(부가법 §32, 부가령 §67, 소득령 §211·§212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	□ 기재사항 명칭 변경
○ 필요적 기재사항 -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 -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-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	○ (좌 동)
- 작성 연월일	- 공급 연월일
○ 임의적 기재사항 - 공급하는 자의 주소, 공급받는 자의 상호·성명·주소, 공급품목, 단가와 수량 등	○ (좌 동)
- 공급 연월일	- 발급일
□ 계산서 작성 내용	□ 기재사항 명칭 변경
○ 필요적 기재사항 -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 -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 - 공급가액	○ (좌 동)
- 작성 연월일	- 공급 연월일

<개정이유> 납세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세금계산서·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Ⅴ. 기타

【소득세 및 법인세】

(1)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	□ **비과세 제도 합리화**
○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○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	○ (좌 동)
○ **법령에 따른 위원회**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**위원 등이 받는 수당**	<삭 제>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

(2)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

(소득법 §12·§14③·§21①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기타소득에 해당**하는 **퇴직자 할인금액** ○ (**퇴직자**)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 ○ (**소득금액**) 퇴직자가 자사·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**시가*보다 할인**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**할인받은 금액** *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○ (**적용요건**) **일반소비자와 차별**하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○ (**분리과세**) 연 300만원 이하 시 20% 분리과세 ※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□ **할인금액 비과세 기준** ○ (**비과세 한도**) Max[시가의 20%, 연 240만원] ○ (**비과세 요건**) ❶ **퇴직자**가 **직접 소비목적**으로 구매 ❷ **일정기간*** **동안 재판매 금지** *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❸ **공통 지급기준**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

<개정이유>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12.31.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

(3)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(소득법 §17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식소각·자본감소 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	□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 취득가액 규정 정비
○ (의제배당 사유) 주주등이 주식소각, 자본감소, 법인의 해산, 합병·분할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경우 ○ (의제배당 금액) ❶ - ❷ ❶ 취득하는 금전, 주식등,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❷ 소멸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- 단,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▪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: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	○ (좌 동)
<추 가>	▪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경우: ① + ②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×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재산 취득가액 × (1 - 가업상속공제적용률)
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	□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
○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**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**	○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**기납부한 소득세액** **(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)**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소각·감자·해산·분할·합병하는 분부터 적용

(4)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(소득법 §45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	□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
○ (**결손금**)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·연금·기타·이자·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- 단,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공제	
○ (**이월결손금***) 15년간 발생순서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 * 위의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+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	○ (좌 동)
❶ (**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**) 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·이자·배당소득 순으로 공제	
❷ (**부동산임대업**에서 발생한 결손금) **부동산임대업**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	- **부동산임대업 →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**

<개정이유>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 명확화

(5)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 (소득법 §155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간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	□ 원천징수 특례 대상 명확화
○ (내용) 투자자에게 이익이 지급되기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	○ (좌 동)
○ (대상)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기구	○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(IMA)

<개정이유>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명확화

(6)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(소득법 §174의2, 소득령 §225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	□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
○ (제출의무자) 금융투자업자	○ 금융투자업자 (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)
○ (제출자료)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	○ 소득세(양도·배당소득)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
-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	-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
<추 가>	- K-OTC 중소·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
- 국외주식등 거래내역	- (좌 동)

<개정이유>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거래·배당 분부터 적용

(7)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(소득령 §80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기부금 세액공제*를 적용받는 노동조합비** 요건 * 공제율: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** 「노동조합법」, 「교원노조법」, 「공무원노조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조합비	□ **세액공제 적용을** 위한 노동조합 **회계공시 요건 조정**
○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(조합원 수 1,000명이상 한정)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	○ (좌 동)
○ **상위 노동조합***(조합원 수 1,0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, 연합단체)의 직전 **회계연도 결산결과가**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**공포**되었을 것 *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	**<삭 제>**

<개정이유> 노조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

※ '26년 중 개정 예정

(8)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(법인법 §24②, 법인령 §39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	□ 국립소방병원 추가
○ (인정범위)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 목적 기부금 ○ (적용대상) ❶ 국립대학병원, 국립대학치과병원, 서울대학교병원 등	○ (좌 동)
<추 가>	-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국립소방병원**
❷ ❶의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	❷ (좌 동)

<개정이유>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(법인령 §14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**이 **받는 주식**(의제배당)에 대해 **과세이연** ○ (**분할범위**) ❶ 또는 ❷ ❶ **인적분할** ❷ **분할법인**이 **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**을 **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** ○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**5년 이상 사업**을 영위한 **외국법인**의 **분할*** *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·부채를 포괄적 승계 - 내국법인이 **완전지배**하는 **외국법인의 분할** - **조세조약**을 체결한 국가에 **설립**된 **외국법인** - 내국법인이 **외국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**에 대해 외국에서 **비과세** 또는 **과세이연** ○ (**과세이연**) 취득주식등을 **종전 장부가액**으로 **승계**

〈개정이유〉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(조특법 §16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	□ 행사가액 요건 관련 사후관리 완화
ㅇ (**특례**) 주식매수선택권 **행사이익**을 **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**로 과세 (양도소득세 과세이연)	ㅇ (좌 동)
ㅇ (**요건**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 - 전용계좌 개설하여 관리 - 타인 양도 불가 -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-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	
ㅇ (**사후관리**) ❶ 또는 ❷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(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)	
❶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*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*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	**❶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**
❷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	❷ (좌 동)

<개정이유>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(조특법 §104의27)

현 행	개 정 안
□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고배당기업* 요건 *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%~30% 분리과세 적용	□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 여부 판정 기준 신설
ㅇ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ㅇ 전년도 배당이 **기준 사업연도**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	ㅇ (좌 동)
- (**기준 사업연도**) **'24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** <단서 신설>	- (좌 동) ▪ **'25.1.1.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**
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- 전년도 배당성향 40% 이상 - 전년도 배당성향 25% 이상 +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% 이상 증가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특례 적용 기준 정비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

(12)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(조특법 §126의6)

현 행	개 정 안
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	□ 추징사유 추가
○ 사업소득금액 10% 이상 과소신고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**로 사업소득금액 10% 이상 **과다신고**

<개정이유> 추징 사유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(조특법 §13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개인** 대상 **최저한세 적용소득**	□ **최저한세가 적용**되는 **부동산 임대소득 추가**
○ (**대상**)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	○ (좌 동)
<추 가>	- **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**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

<개정이유>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【양도소득세 및 상속·증여세】

(1)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

(상증법 §63②, 상증령 §57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식 평가방법	□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정
○ 국내 상장주식: 평가기준일 전·후 2개월 종가 평균 ○ 비상장주식: 보충적 평가방법* * (1주당 순손익가치 × 3 + 1주당 순자산가치 × 2) ÷ 5	○ (좌 동)
○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: Max(❶, ❷)	○ 국내·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: Max(❶, ❷)
❶ 공모가격 ❷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과의 정합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

(2)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(상증령 §35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비과세되는 증여재산**	□ **비과세 증여재산 추가**
○ 국가·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	○ (좌 동)
○ 신용보증기금, **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**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	○ **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**
- 기술보증기금 - 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- 예금보험기금,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- 서민금융진흥원 - 공급망안정화기금 - 첨단전략산업기금	- (좌 동)
<추 가>	-「한미전략투자법」에 따른 **한미전략투자기금**

<개정이유>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략적 투자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※ ‘26년 중 개정 예정

(3)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·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

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(상증법 §83)

현 행	개 정 안
□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	□ 금융재산 등 일괄조회 대상 추가
○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*	○ (좌 동)
* 은행, 투자중개업자, 증권금융회사, 보험회사 등	
<추 가>	○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에 따른 **가상자산사업자**

<개정이유>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·증여세 과세자료 수집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질문·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(상증법 §84)

현 행	개 정 안
□ 세무공무원의 **상속세·증여세 관련 질문·조사권 행사 대상**	□ **질문·조사권 행사 대상 추가**
ㅇ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피상속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* * 생명·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, 퇴직금·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,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, 신탁업무 취급자, 금융투자업자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에 따른 **가상자산사업자**

<개정이유>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·증여세 과세자료 수집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질문·조사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(상증법 §78·§82)

현 행	개 정 안
□ 지급명세서 등 제출* 의무자 *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	□ 제출 의무자 변경
❶ 보험금, 퇴직금 등 지급하는 자 ❷ 주식, 출자지분, 채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❸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❹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 ❺ 금융투자업자	○ (좌 동)
❻ 투자조합	❻ 투자조합 →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* * 업무집행자, 업무집행조합원 등
□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	□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
○ 자료 미제출,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 있는 경우 - ❶, ❹ : 해당 부분 금액의 0.2% - ❷, ❸ : 해당 부분 금액의 0.02%	○ (좌 동) - ❺, ❻ 추가
○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- ❶, ❹ : 해당 부분 금액의 0.1% - ❷, ❸ : 해당 부분 금액의 0.01%	○ (좌 동) - ❺, ❻ 추가

<개정이유>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

<적용시기> '28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5)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(상증법 §48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출연자*** 또는 **그 특수관계인**이 **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**이 되는 경우 **가산세 부과** * 출연일 현재 Min[공익법인 총출연재산가액의 1%, 2천만원]을 초과하여 출연	□ **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추가** * (좌 동)
ㅇ (**요건**)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/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(이사 제외)이 되는 경우 ㅇ (**예외**) - 기존 이사의 사망 등으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/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2개월 이내 이사를 보충·개임하는 경우	ㅇ (좌 동)
<추 가>	- 공익법인의 **주요 의사결정**과 **관계없는 업무**에 **상근**으로 종사하고 **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**를 받는 **직원**이 되는 경우 * 업무 범위, 급여 상한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
ㅇ (**가산세**) 부과요건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경비 전액 - 단, 의사, 교직원, 보육사, 사서, 학예사, 사회복지사 자격자 등 관련 경비 제외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

(6)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	□ 비거주자 비과세 대상 제외
ㅇ (대상) 1주택* 소유자 *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	ㅇ 1주택 소유 거주자 (비거주자 제외)
ㅇ (특례) 해당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조세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(7)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(종부법 §8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1세대 1주택 특례**	□ **신청필요 특례 조정**
ㅇ (**특례**) 1주택과 다음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* 적용 * 기본공제 12억원,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최대 80% 적용 ❶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❷ 대체취득 주택 ❸ 상속주택 ❹ 지방 저가주택	ㅇ (좌 동)
ㅇ (**절차**) **❷~❹는 특례 적용 위해 관할 세무서장**에 **신청**	ㅇ **지방 저가주택(❹)**은 **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적용** (**❷·❸**은 신청 필요)

<개정이유>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(종부법 §9⑦·⑨)

현 행	개 정 안
□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	□ 산출세액 제외 특례주택 추가
○ (특례) 1주택과 특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액공제* 적용 * 연령·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(최대 80%) - 세액공제는 아래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에만 적용 ▪ 他 주택 부속토지분 ▪ 일시적 대체취득분 ▪ 상속주택분 ▪ 지방 저가주택분	○ (좌 동) ▪ 인구감소지역주택분 ▪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

<개정이유>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9)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

(조특법 §19의2, 조특령 §17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실증 테스트베드*** **법인**에 대한 **출연금 증여세 비과세** 특례 신설 *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, 효과, 안정성, 양산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○ (**대상**)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**테스트베드를 운영**하는 **법인**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**비영리법인** ❶ **국내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**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허용* * 출연자와 협력 관계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미해당 ❷ 이사회 이사 중 **국가·지방 공무원,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자** 및 **공공기관 임·직원의 수**가 **50% 이상** ❸ **산업통상부장관**이 「산업기술혁신법」에 따라 해당 법인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**협약을 체결**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**출연 또는 보조** 등 ○ (**특례**)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**증여세 비과세** ○ (**사후관리**) ❶~❸ **요건 미충족**시 비과세된 증여세액 및 **이자상당액 추징** ○ (**적용기한**) ’31.12.31.

<개정이유>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및 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(10)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69)

현 행	개 정 안
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○ (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- 농지소재지 거주 -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*를 3년 이상 자경 * 65~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·밭·과수원 -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○ (감면율) 100%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‘26.12.31.	○ ‘27.12.31.

<개정이유>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

(11)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(조특법 §97의1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**에 대한 **양도소득세 과세특례** ○ (**대상**) 「**공공주택특별법**」 등에 따른 **현물보상분양권***을 1개 보유한 **1세대**의 **현물보상분양권 양도** *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협의매수로 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한정 - 사업 시행기간 중 **거주**를 위해 **취득한 주택** 및 해당 주택 보유자의 **현물보상분양권 양도*** 포함 *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○ (**특례**) '**조합원입주권**'으로 간주하여 **1세대 1주택**에 준하는 **비과세·장특공제** 적용 - (**비과세**) **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** - (**장특공제**) **장특공제 우대**(최대 80%) 적용 ○ (**적용기한**) **'29.12.31.**

<개정이유>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【부가가치세 등】

(1)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(부가령 §121)

현 행	개 정 안
□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제출 사업자	□ 의무제출 사업자 확대
❶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❷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결제대행업체(1차 PG) ❸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등록 필수) ❹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❺ ❶~❹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-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- 앱 마켓사업자	ㅇ (좌 동)
<추 가>	- 1차 PG(❷)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-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 제2항 각호의 업무*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*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, 전자자금 이체업무,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 등

〈개정이유〉 조세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(조특법 §10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	□ 상시화
○ (대상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6.12.31.	<삭 제>

<개정이유>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

(3)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

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(조특법 §106②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대회 관련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○ (대상)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·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* *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한정 ○ (적용기한) '27.12.31.

<개정이유>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(조특법 §116①·②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대회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** ○ (**대상**)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○ (**적용기한**) **'27.12.31.**

<개정이유>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(조특법 §118①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** ○ (**대상**)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**시설 제작·건설** 또는 **경기운영에 사용**하기 위해 **수입하는 물품** ○ (**특례**) **관세 50% 감면**

<개정이유>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【국제조세】

(1)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(Side-by-Side Package) 반영

① 병행체계(Side-by-Side System) 적용면제 신설(국조법 §80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병행체계 적용면제** ○ (**요건**) 다국적기업그룹의 **최종모기업**이 **적격병행체계***를 갖춘 **국가에 소재** * ①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③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○ (**효과**)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**소득산입규칙·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'0'으로 간주** ○ (**적용사업연도**) - '25.12.31. 이전 적격국내·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: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- '26.1.1.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: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(국조법 §80⑥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최종모기업 적용면제** ○ (**요건**) 다국적기업그룹의 **최종모기업**이 **적격국내조세제도***를 갖춘 **국가에 소재** * ①명목세율 20% 이상 ②실효세율 15%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○ (**효과**)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**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'0'으로 간주** ○ (**적용사업연도**)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(국조법 §80⑦, 국조령 §138의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실질기반 적용면제 ○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·내국추가세액 계산 □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 ○ (정의) 지출·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- (예시) 기업의 지출액*, 재화 등 생산량**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* 연구개발,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**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활동 산출물, 전력, 채굴·정제 산출물 등 ○ (계산) 유형별로 조세혜택 대응액 산정 - (세액공제)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- (초과손금산입) 초과 손금산입금액 × 법인세율 - (소득면제/우대세율*) 면제소득 × 법인세율 * 우대세율 적용시: 우대소득 × (법인세율-우대세율) ○ (한도) Max(적격인건비,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) × 5.5% - 다만, 5년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× 1% ○ (적용사업연도) ’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·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(국조법 §80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	□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
○ (**요건**)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* 충족 * ①소액, ②실효세율 15% 이상, ③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※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	○ (좌 동)
○ (**효과**)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·내국추가세액을 '0'으로 간주	○ (좌 동)
<**단서 신설**>	- 추가세액·내국추가세액에 **당기추가세액가산액*·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**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**'0'으로 간주하지 않음** *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·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(국조령 §138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** ○ (**요건**) 사업연도의 개시일 **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**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 기업그룹의 **추가세액·적격소재국추가세액 미발생** ○ (**효과**)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조정대상조세 대신 **간이소득·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** - **간이실효세율≥15%**이거나 **간이소득≤0**인 경우, 추가세액·내국추가세액을 '0'으로 간주 ○ (**적용사업연도**) '26.12.3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·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(국조령 §138⑥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**	□ **52~53주 사업연도* 채택 기업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** *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
○ '25.12.31. 이전에 개시하고 **'26.12.30.**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	○ '25.12.31. 이전에 개시하고 **'27.1.3. 이전**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2)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(국조법 §87, 국조령 §144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	□ 부과대상 명확화
ㅇ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	ㅇ (좌 동)
<추 가>	-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 포함

<개정이유>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

(3)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(소득법 §118의17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외로 **이주시 전출세** 부과	□ (좌 동)
ㅇ (**대상**)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로서 ❶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·거소를 둔 자 ❷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(대주주)	ㅇ (좌 동)
ㅇ (**자산**)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	
<신 설>	□ **재전입자** 주식매각 시 **취득가액 과세특례** 신설 ㅇ (**대상**)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**5년 경과 후** 국내 **재전입**하여 **주식**을 **매각**한 자 -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제외 ㅇ (**취득가액**) **전출세 납부일**의 **주식가액**을 취득가액 간주 ※ 단,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가액이 전출 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배제

<개정이유> 국내 재전입 시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

(4)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

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(법인법 §18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자회사로부터의 **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**	□ 외국자회사의 **구조조정**으로 지급받는 **주식배당**에 대해 **과세이연 특례 신설**
ㅇ (**대상**) 내국법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	ㅇ (좌 동)
- (**익금불산입률**) 95%	
<신 설>	ㅇ (**특례**) ❶~❹ 모두 충족 ❶ 우리나라와 **조세조약**이 체결된 동일 국가에 소재한 **자회사** 및 **손자회사** ❷ 소재지국의 **법령상 적격 구조조정**에 해당하여 **비과세 또는 과세이연** ❸ **완전지배관계**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**지분 총량**을 **현물배당** ❹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**각각 5년 이상 사업**을 영위 - (**익금불산입률**) 100%

<개정이유>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

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 (법인령 §7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배당**으로 취득한 **주식**의 **취득가액**	□ **해외** 자회사의 **구조조정**에 따라 **배당받은 주식**의 **취득가액 신설**
○ (**원칙**) **시가***	○ (좌 동)
*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	
<**신 설**>	○ (**구조조정 시**)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**시가의 95%**
	※ **주식배당금액**을 **100% 익금불산입**하되, 주식의 **취득가액**을 **주식배당금액**의 **95%**로 낮추어 향후 **주식처분시 5%**가 **양도차익에 포함**되도록 **과세이연**

<개정이유>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

(5)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(소득법 §156의9, 법인법 §98의8)

현 행	개 정 안
□ 외국인통합계좌	□ 거래대상 상품 확대
ㅇ (**대상**) 주식	ㅇ (**추가**) **ETF·ETN**(레버리지·인버스 ETF, ETN 제외) ※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
ㅇ (**원천징수 특례**) 해당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(외국금융사)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* 특례 미적용시 실질귀속자(외국인투자자)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납세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【관세】

(1)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(관세법 §40)

현 행	개 정 안
□ 징수금액의 최저한 ○ **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*이 1만원 미만**인 경우 미징수 * 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관세, 내국세 등 포함	□ **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** ○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**담배소비세·지방교육세액 제외**

<개정이유>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저한 적용대상 정비

<적용시기> '27.7.1.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(관세법 §42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○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*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*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신청·승인받는 제도 <추 가>	□ 감면사유 확대 ○ (좌 동) ○ **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**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익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
(관세법 §44의2·§277의3②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**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** ○ (**실태확인**) **체납자 현황을 파악**하기 위해 **실태확인원**으로 하여금 **실태확인 실시 가능** ○ (**확인범위**) ❶~❹ ❶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❷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❹ ❶~❸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○ (**실태확인종사자 의무**) 실태확인원(이었던 자 포함)은 실태확인 관련 **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** *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<개정이유> 체납 정리 효율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

(4)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(관세법 §223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시 처벌	□ 처벌 대상 추가
ㅇ (금지행위) -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* * 자신의 성명·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	ㅇ (좌 동)
<추 가>	-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ㅇ (위반시 벌칙) 1천만원 이하 벌금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

(5)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(관세법 §235)

현 행	개 정 안
□ 지식재산권 등 보호	□ 보호대상 및 절차 추가
ㅇ (**보호대상**) - 상표권, 저작권, 특허권 등	ㅇ (좌 동)
<추 가>	- 국가핵심기술 등 **산업기술*** *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
ㅇ (**보호절차**)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 등	ㅇ (좌 동)
<추 가>	- **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·국정원장 요청 시**에 한하여 **세관장 직권**으로 통관보류 등

<개정이유>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

(6) 불법·불량·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
(관세법 §264의10③·④·§277의3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불법·불량·유해물품 정보제공 요청	□ 관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
○ (**요청주체**) 관세청 ○ (**요청대상**) 중앙행정기관 ○ (**요청정보**) 기관이 보유한 불법·불량·유해 물품 등에 대한 정보* * ① 법정 조건·성분·표시 등 위반물품 ② 법정 조건 등 미부합으로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, 반려한 물품 정보 ③ 위반물품 등을 제조·거래·보관·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	○ (좌 동)
<신 설>	○ (**제공정보**) 관세청장은 **물품 안전관리**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된 **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**를 **관계기관**에 제공 가능 ○ (**비밀유지 의무**) 각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**제공·누설·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*** *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

<개정이유>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

(7) 마약류·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

①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(관세법 §264의11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ㅇ (**요구주체**) 관세청 ㅇ (**요구대상**)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(**요구정보**) - 마약류의 반입·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	□ 총포류 관련 정보 추가 ㅇ (좌 동)
<추 가>	- **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** - **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**

<개정이유> 총포류 밀수 단속 강화

<적용시기> ‘27.1.1.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

② 공항·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(관세법 §264의11②·③·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공항·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정보 요청 ○ (요청주체) 관세청 ○ (요청대상)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* 공항·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·처리하는 기관 ○ (요청내용) 마약류 등 수입금지·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·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* 해당 정보 제출을 위해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

<개정이유> 마약류 등 밀수 단속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

【국세 제반 분야】

(1)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(국기법 §21②·§47의4①·§47의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	□ 성립시기 명확화
○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	○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
□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	□ 기간 산정 합리화
○ 납부고지 전 : ❶×❷×❸	○ (좌 동)
❶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~ **납부 고지일(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)의 전날**까지의 일수	❶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~ **납부 고지일의 전날(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)**까지의 일수
❷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❸ 일 0.022%	- (좌 동)
○ 납부고지 후 : ❶×❷×❸	○ (좌 동)
❶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~ **납부일의 전날**까지의 월수	❶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~ **납부일**까지의 월수
❷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❸ 월 0.67%	- (좌 동)

<개정이유>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(국기법 §26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법인세 부과제척기간* 특례 *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○ 사기·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시 : 10년 -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: 10년 ○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 시 : 7년	□ 특례대상 확대 ○ (좌 동)
<추 가>	-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: 7년

<개정이유>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(국기법 §26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* 대상 *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○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 상 이월결손금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이월된 세액공제액	□ 특례대상 확대 ○ (좌 동)
<추 가>	○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 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

<개정이유>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합리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

(4)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 (국기법 §81의18②·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	□ 심의대상 확대
○ 세무서·지방청 심의결과*에 대한 취소·변경 요청 *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 ○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	○ (좌 동)
<추 가>	○ **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*** * 납세자가 심사·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5)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(국기법 §84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*** *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 실시 ㅇ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	□ **적용 종료**

<개정이유>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비

(6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(국기법 §85의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명단공개 대상**	□ **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**
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ㅇ 조세포탈범(조세포탈,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)	ㅇ (좌 동)
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**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인 자**	ㅇ **과소신고 금액 30억원 초과인 자**

<개정이유>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7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7)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(국징법 §66②, 국징령 §53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	□ 대상 확대
ㅇ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	ㅇ (좌 동)
<추 가>	ㅇ 금지금 *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.99% 이상인 금 ㅇ 외국통화

<개정이유> 강제징수 절차 효율성 제고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(조특법 §142, 조특령 §135)

현 행	개 정 안
□ 조세특례 **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**	□ **면제사유 구체화**
○ **경제·사회적 상황 대응**을 위한 경우로서 **국무회의 심의**를 거친 사항	○ **다음의 경제·사회적 상황 대응**을 위한 경우로서 **국무회의 심의** 거친 사항
<신 설>	- 경기지표 하락 등 **경제전반 위축** 또는 위축 우려 - **특정 산업부문·경제활동**에 **위축** 또는 위축 우려 - **주요 사회지표 악화** 또는 악화 우려
○ 남북교류협력 관련, 국가간 협약·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○ 국제대회,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○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

<적용시기> ’27.1.1.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

[참고]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

법률명	약 어		
	법률	시행령	시행규칙
▪ 국세기본법	국기법	국기령	국기칙
▪ 국세징수법	국징법	국징령	국징칙
▪ 조세특례제한법	조특법	조특령	조특칙
▪ 소득세법	소득법	소득령	소득칙
▪ 법인세법	법인법	법인령	법인칙
▪ 상속세 및 증여세법	상증법	상증령	상증칙
▪ 종합부동산세법	종부법	종부령	종부칙
▪ 부가가치세법	부가법	부가령	부가칙
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	국조법	국조령	국조칙
▪ 농어촌특별세법	농특법	농특령	농특칙
▪ 주세법	주세법	주세령	주세칙
▪ 관세법	관세법	관세령	관세칙